

# 產災保險 中長期 財政推計

2000. 11

韓國勞動研究院

## 목 차

요 약 .....	1
제 1 장 서 론 .....	4
제 1 절 산재보험의 특성 .....	4
1. 산재보험의 의의 .....	4
2. 산재보험의 성격 .....	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1. 연구 목적 .....	6
2. 연구 범위 및 한계 .....	6
3. 연구 방법 .....	7
제 2 장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제도 현황 .....	8
제 1 절 산재보험기금 현황 .....	8
1. 산재보험기금의 자원 .....	8
2. 산재보험기금 수지현황 .....	9
제 2 절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역 .....	11
1. 요양급여 .....	12
2. 휴업급여 .....	13
3. 장애급여 (일시금 및 연금) .....	13
4. 유족급여 (일시금 및 연금) .....	14
5. 장의비 .....	14
6. 상병보상연금 .....	14

제 3 절 산재보험 제도 변화 .....	15
1. 적용 및 징수 제도 .....	15
2. 보상제도 .....	18
제 4 절 최근 제도 변경사항(2000. 7. 1) .....	21
1. 적용 및 징수 분야 .....	21
가. 적용 범위 확대 .....	21
나. 기준 임금 적용 .....	22
다.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 .....	22
2. 보상 분야 .....	23
가. 간병급여제도 도입 .....	23
나.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지급 .....	23
다. 최고보상 기준금액 설정 .....	24
라. 통상근로계수 도입 .....	24
마.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설정 .....	25
바.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 .....	26
제 3 장 산재보험 급여항목별 과거 추이 및 전망 .....	27
제 1 절 요양급여 .....	27
제 2 절 휴업급여 .....	30
제 3 절 장애급여 .....	32
1. 장애일시금 .....	32
2. 장애연금 .....	35
제 4 절 유족급여 .....	38
1. 유족일시금 .....	38
2. 유족연금 .....	41
제 5 절 장의비 .....	43
제 6 절 상병보상연금 .....	46

제 7 절 산재보험 총 급여액 추이 .....	48
제 4 장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	52
제 1 절 재정추계 개요 .....	52
제 2 절 총재해자수 추계 .....	53
1. 적용근로자수 .....	53
2. 총재해율 .....	55
3. 총재해자수 .....	56
제 3 절 급여항목별 수급자수 중장기추계 .....	57
1. 요양급여 수급자수 .....	59
2. 휴업급여 수급자수 .....	60
3. 장애일시금 수급자수 .....	62
4. 장애연금 수급자수 .....	63
5. 유족급여(일시금+연금) 수급자수 .....	64
6. 장의비 수급자수 .....	65
7.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	67
제 4 절 급여항목별 총급여액 중장기추계 .....	68
1. 요양급여액 추계 .....	68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	68
나. 총급여액 추계 .....	69
2. 휴업급여액 추계 .....	70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	70
나. 총급여액 추계 .....	71
3. 장애급여액 추계 .....	72
가. 1인당 장애일시금 전망 .....	72
나. 장애일시금 추계 .....	73
다. 1인당 장애연금 전망 .....	73
라. 장애연금 추계 .....	74
4. 유족급여액 추계 .....	75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	75

나. 총급여액 추계 .....	76
5. 장의비 추계 .....	77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	77
나. 총급여액 추계 .....	77
6. 상병보상연금 추계 .....	78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	78
나. 총급여액 추계 .....	79
제 5 절 총급여액 중장기추계 및 향후전망 .....	79
1. 총급여액 추계 .....	79
2. 제도변경에 따른 향후전망 .....	82
제 5 장 산재보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83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	83
1. 중증 재해자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	83
가.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	83
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해소방안 마련 .....	84
2. 연금지급 체계의 개선 .....	84
가. 연금수급기간에 대한 고려사항 .....	84
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	88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	89
제 6 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부    록 .....	94

##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산재보험 수입·지급 추이 .....	10
<표- 2> 기업규모별·업종별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이 .....	16
<표- 3>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	17
<표- 4> 산재보험급여수준 개선현황 .....	20
<표- 5> 보상기준액 .....	23
<표- 6> 최고·최저금액 산출 .....	26
<표- 7> 장애연금 수급자수 .....	36
<표- 8> 유족연금 수급자수 .....	41
<표- 9> 총보험급여액 현황 .....	51
<표-10> 연금·일시금 비교 .....	87
<표-11> 요양급여 현황 .....	94
<표-12> 휴업급여 현황 .....	95
<표-13> 장애급여 현황 .....	96
<표-14> 유족급여 현황 .....	97
<표-15> 장의비 현황 .....	98
<표-16> 상병보상연금 현황 .....	99
<표-17> 요양급여 추계 .....	100
<표-18> 휴업급여 추계 .....	101
<표-19> 장애 일시금 추계 .....	102
<표-20> 장애 연금 추계 .....	103
<표-21> 유족급여 추계 .....	104
<표-22> 장의비 추계 .....	105
<표-23> 상병보상연금 추계 .....	106

## 그 립 목 차

<그림- 1> 산재보험 보상 과정 .....	12
<그림- 2> 요양급여 수급자수 .....	28
<그림- 3> 요양급여 1인당 급여액 .....	29
<그림- 4> 요양급여 총 급여액 .....	29
<그림- 5> 휴업급여 수급자수 .....	30
<그림- 6> 휴업급여 1인당 급여액 .....	31
<그림- 7> 휴업급여 총 급여액 .....	32
<그림- 8> 장해일시금 수급자수 .....	33
<그림- 9> 장해일시금 1인당 급여액 .....	34
<그림-10> 장해일시금 총급여액 .....	35
<그림-11> 장해연금 수급자수 .....	36
<그림-12> 장해연금 1인당 급여액 .....	37
<그림-13> 장해연금 총급여액 .....	47
<그림-14> 유족일시금 수급자수 .....	48
<그림-15> 유족일시금 1인당 급여액 .....	40
<그림-16> 유족일시금 총급여액 .....	40
<그림-17> 유족연금 수급자수 .....	42
<그림-18> 유족연금 1인당 급여액 .....	42
<그림-19> 유족연금 총급여액 .....	43
<그림-20> 장의비 수급자수 .....	44
<그림-21> 장의비 1인당 급여액 .....	45
<그림-22> 장의비 총급여액 .....	45
<그림-23>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	46

<그림-24> 상병보상연금 1인당 급여액 .....	47
<그림-25> 상병보상연금 총급여액 .....	47
<그림-26> 총 수급자수 .....	48
<그림-27> 1인당 총보험급여액 .....	49
<그림-28> 총보험급여액 .....	50
<그림-29> 항목별 총급여액 추이 .....	51
<그림-30> 적용근로자수 .....	55
<그림-31> 재해율 .....	56
<그림-32> 총재해자수 .....	57
<그림-33> 요양급여 비율 .....	59
<그림-34> 요양급여 수급자수 .....	60
<그림-35> 휴업급여 비율 .....	61
<그림-36> 휴업급여 수급자수 .....	61
<그림-37> 장해일시금 비율 .....	62
<그림-38> 장해일시금 수급자수 .....	63
<그림-39> 장해연금 수급자수 .....	64
<그림-40> 유족급여 수급자수 .....	65
<그림-41> 장의비 비율 .....	66
<그림-42> 장의비 수급자수 .....	66
<그림-43> 상병보상연금 비율 .....	67
<그림-44> 장의비 수급자수 .....	68
<그림-45> 1인당 요양급여액 .....	69
<그림-46> 총요양급여액 .....	70
<그림-47> 1인당 휴업급여액 .....	71
<그림-48> 총휴업급여액 .....	71
<그림-49> 1인당 장해일시금 .....	72
<그림-50> 총장해일시금 .....	73

<그림-51> 1인당 장해연금 .....	74
<그림-52> 총장해연금 .....	75
<그림-53> 1인당 유족급여액 .....	75
<그림-54> 총유족급여액 .....	76
<그림-55> 1인당 장의비 .....	77
<그림-56> 총장의비 .....	78
<그림-57> 1인당 상병보상연금 .....	78
<그림-58> 총상병보상연금 .....	79
<그림-59> 총급여액 추계 .....	80
<그림-60> 항목별 총급여액 추이 .....	81
<그림-61> 장해연금 신규수급자수 및 총수급자수 .....	85
<그림-62> 장해급여 수급자수 (일시금, 연금) .....	85
<그림-63> 연금수급자 비율 .....	86
<그림-64> 총급여액 (연금, 일시금) .....	87

## 요 약

그 동안 산재보험의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89년 이후 더욱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1인당 급여액과 적용근로자수의 급속한 증가는 산재보험의 징수금 상승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금수급이 늘어났고 2000년도부터는 연금수급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연금수급액에 대한 규모와 이에 대한 재정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폭적인 적용확대와 제도변경에 따라 산재보험의 향후 재정수요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급여액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 현재의 경험적인 자료가 너무나 미비되어 있어 정교한 예측과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추세를 이탈하고 있으며, 금년의 대폭적인 제도변경 사항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장기적인 재정추계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주요 변수의 경험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은 적어도 몇 년간의 경험치가 축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년의 제도변경 사항이 미치는 구체적인 장기예측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제외시키고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방향제시 정도에 그치기로 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의 지급액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징수 및 기금운용 등의 부분은 금번 추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인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모형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조정(calibration)이 이루어졌다.

항목별 급여부분에 대한 추계는 먼저 수급자수에 대한 예측을 한 후 1인당 수급액에 대한 장기 전망치를 이용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였다. 연금지급에 대한 추계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자료상의 한계와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지급금 산출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산출방법을 다소 달리 적용하였다.

급여항목별 수급자수는 기본적으로는 총재해자수에 대한 급여항목별 수급자수의 비율(재해율 비중) 추이에 의해 산출하였다. 재해율 비중 추이를 각 급여항목별로 산출해 보면 급여액의 추이가 항목별로 지금까지 다소 상이하게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제도변화의 내용이 각 급여항목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각 지급항목별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른 모형 또는 방법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였다.

총재해자수는 적용근로자수에 재해율을 곱하여 추계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는 i) 장기적인 적용근로자수를 추정한 후, ii) 재해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과거 추세로부터 회귀분석에 의해 예측함으로써 이들 수치의 연도별 곱을 통하여 총재해자수를 추계하였다.

적용근로자수 추이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을 자연증가율로 상정하였으며,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적용근로자수의 증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에 대한 추산치를 반영하였다. 재해율은 기본적으로는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적합도가 가장 높은 추세선을 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장기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추계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 변수들의 단기적인 이상 움직임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일부 추계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학적인 분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일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욱 중시 다루기로 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기간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산재보험의 특성

### 1.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은 1963년에 시작된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자 재해보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급여종류와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과 급여 및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개별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둬으로써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보상 측면에서는 책임이행의 강제성이 미약하며 강력한 행정적 규제를 갖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개별책임주의는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므로 실제적인 보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대다수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협상능력 미약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재해보상 책임을 각 사업장별로 공동 분산시킴으로써 재해보상으로 인한 개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해보상의 주체와 객체가 개별 사업주와 피재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와 피재근로자 간의 관계가 됨으로써 재해보상을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재해보상 청구권 행사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가라는 보험자에 의해 보증되므로 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산재보험의 성격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주 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는 구별된다.

산재보험의 특징으로 첫째,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금은 근로자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개별 사업주가 되고, 보험수혜자는 피재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둘째, 보험가입자와 보험수혜자가 일치하는 여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보험수혜자(피재근로자)의 보험능력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가입 및 급여수급에 대한 조건으로서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셋째, 보험료 징수 등 제반 보험관리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연구 목적

그동안 산재보험의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지난 1989년 이후 지급액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잦은 제도 변경에 따른 1인당 급여액과 적용근로자수의 급속한 증가는 산재보험의 징수액 상승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최근의 대폭적인 적용 확대와 제도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의 향후 재정수급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산재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산재보험의 중장기적인 소요재정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한계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의 지급액에 대한 장기적인 추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징수 및 잉여금 등에 대한 추산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먼저 재정추계를 위한 경험 자료의 불충분을 들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업무를 이전받은 1995년부터 약 5년에 걸친 데이터만 전산화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자료는 경험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수급자수 등에 관한 자료의 양이 불충분한 실정이며, 정확성이 떨어져 부분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빈번한 제도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지급액의 변동은 산재보험의 중장기 소요재정 추계에 필요한 충분한 분석자료의 확보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협적인 자료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추계를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분석의 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 한도 내에서 급여항목별 지급액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주로 추세를 이용한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급여)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추계를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항목별 지급액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장기간에 걸친 항목별 수급자수를 주로 재해율에 대한 비율추이에 의해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인당 지급액에 대한 전망치를 적용함으로써 급여항목별 총급여액을 추계하기로 한다. 항목별 수급자수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총재해자수에 대한 항목별 수급자 비율의 추이 등을 이용하였으며, 단기적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1인당 지급액에 대한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러한 지급항목별 추계결과는 다시 여러 번에 걸친 조정(calibration) 과정을 거쳐 상호 검정됨으로써 장기추계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를 다시 각 항목별로 합계함으로써 총지급액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은 경험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기간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높은 적합도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표본수가 너무 작아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계열분석은 중장기 추계 모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제 2 장

###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제도 현황

#### 제 1 절 산재보험기금 현황

##### 1. 산재보험기금의 재원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주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사무집행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

재정의 수입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산재보험법 제80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 수행지원을 위한 출연금, 산업재해의 예방으로 보험급여 지급액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목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2항에 의한 산재예방기금으로의 출연금,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키 위한 반환금, 책임준비금(산재보험법 제84조) 및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영비(산재보험법 제8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재해근로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83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에 다음 연도 보험사업에 소요될 지출액을 추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징수할 개산보험료 운용액을 산정하고, 과거 3년 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을 사업종류별로 산정·고시하고 있다.

이렇게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업종의 정해진 보험요율에 당해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개별실적요율)을 가감한 후에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2. 산재보험기금 수지현황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수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에 의한 적용근로자수의 증가와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현저히 증가해 왔다. 산재보험료 수입액이 1966년에 5억 2천만원에서 1999년에는 1조 6,121억원으로 30여년 동안 약 3,09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1년에 9,616억원에서 1992년에 1조 881억으로, 1997년에는 2조 201억으로 각각 10년, 7년 동안 1조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기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서는 적용대상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자수의 감소와 임금 총액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감소율을 보면 1998년의 17.5%에서 1999년의 6.6%로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조치가 있었던 연도의 기금규모가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전면적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기금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적용대상 확대와 미가입 사업장 발굴에 따라 이러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연도별 산재보험 수입·지급 추이

(단위 : 원, %)

	징수결정 총액 (A)	수납 총액 (B)	수납율 (B/A)	지급보험료 (C)	수지율 (C/B)
1966	539,441,802	521,729,816	96.7	452,761,505	86.8
1967	980,615,386	867,512,303	88.5	581,945,485	67.1
1968	1,557,373,465	1,420,888,101	91.2	837,976,609	59.0
1969	2,798,579,824	2,351,192,453	84.0	1,306,542,681	55.6
1970	3,691,602,624	3,104,020,708	84.1	1,843,599,713	59.4
1971	4,730,408,007	3,805,605,180	80.4	2,539,336,601	66.7
1972	6,485,905,519	5,379,676,399	82.9	3,456,740,887	64.3
1973	7,347,192,621	6,474,053,714	88.1	4,368,090,297	67.5
1974	10,842,576,010	9,331,029,404	86.1	6,516,929,206	69.8
1975	16,230,791,729	14,338,053,180	88.3	10,380,390,721	72.4
1976	23,218,669,736	21,347,471,538	91.9	12,670,839,899	59.4
1977	32,056,454,798	30,186,301,482	94.2	21,618,770,449	71.6
1978	49,925,705,695	47,528,213,511	95.2	30,418,532,981	64.0
1979	75,654,634,609	71,717,864,477	94.8	53,798,563,525	75.0
1980	91,676,097,493	86,066,630,104	93.9	62,504,522,834	72.6
1981	103,919,528,862	96,164,281,142	92.5	76,219,581,029	79.3
1982	128,575,926,453	117,875,117,858	91.7	97,140,814,082	82.4
1983	150,472,371,362	137,039,828,341	91.1	117,610,686,323	85.8
1984	182,706,878,411	165,817,041,622	90.8	142,176,576,812	85.7
1985	228,438,037,339	205,628,583,538	90.0	185,998,958,370	90.5
1986	269,229,130,608	240,153,782,798	89.2	214,730,693,470	89.4
1987	338,424,901,618	298,355,612,570	88.2	241,255,121,540	80.9
1988	393,784,049,279	336,215,061,030	85.4	296,994,666,360	88.3
1989	495,753,780,520	424,357,084,280	85.6	369,305,325,880	87.0
1990	698,757,541,330	601,045,073,070	86.0	539,351,470,010	89.7
1991	900,672,943,620	788,718,000,980	87.6	701,514,052,030	88.9
1992	1,250,495,819,580	1,088,147,561,220	87.0	931,564,168,860	85.6
1993	1,636,035,759,910	1,444,792,934,462	88.3	872,530,590,480	60.4
1994	1,521,986,748,150	1,291,418,110,860	84.9	998,562,724,840	77.3
1995	1,702,530,716,650	1,453,523,667,630	85.4	1,133,577,490,290	78.0
1996	1,983,446,224,660	1,675,402,057,880	84.5	1,355,317,130,080	80.9
1997	2,367,197,216,470	2,020,103,496,030	85.3	1,556,041,967,620	77.0
1998	2,119,666,072,180	1,719,087,067,930	81.1	1,451,065,987,070	84.4
1999	2,062,243,044,550	1,612,116,030,910	78.2	1,274,225,648,770	79.0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산재보험의 지출도 1993년, 1998년, 1999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급보험료가 1966년의 4억 5천만원에서 1999년에는 1조 2,742억원으로 약 2,815배 증가하였다.

수납률은 1976년부터 1985년까지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평균 85%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1997년(85.3%)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납률이 더욱 하락(1998년에 81.1%, 1999년에 78.2%)하였다. 따라서 향후 산재보험 재정의 건진성을 위해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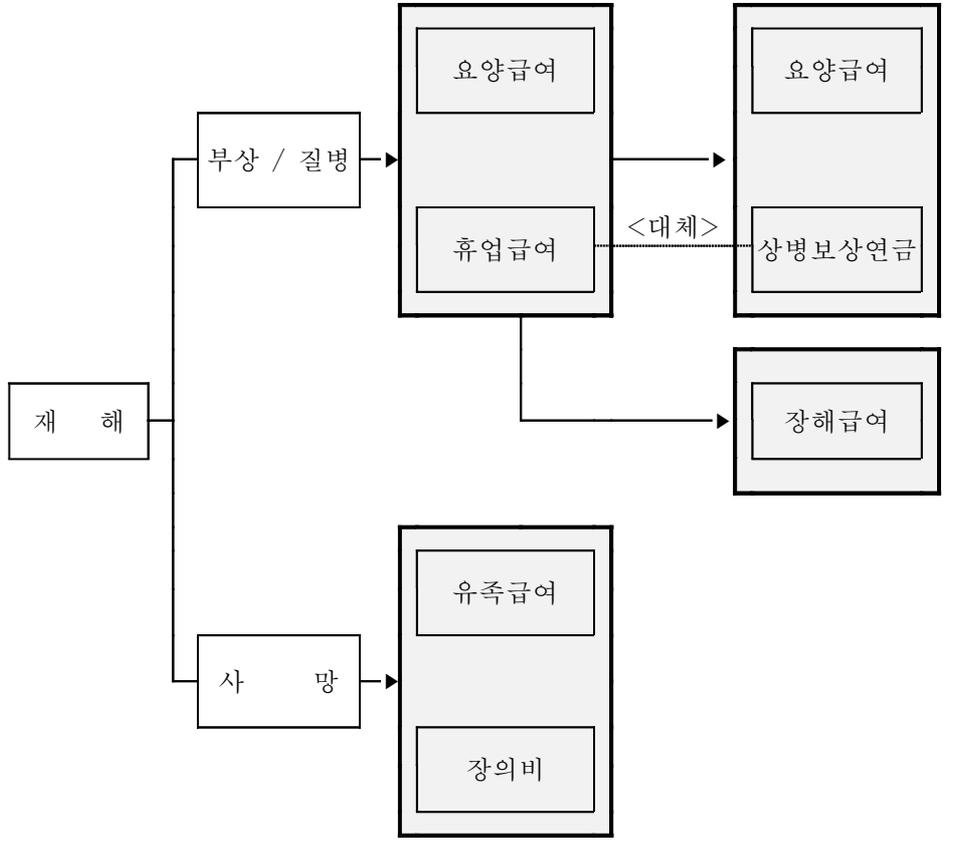
수지율은 제도 초기에는 상당히 양호하여 1969년에 55.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계속 악화되어 1985년에는 90.5%까지 상승하였고 1985년부터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1992년까지 85.6% 수준으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1995년 이후에는 더욱 호전된 상태(77~84%)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8년도 재해율은 1997년의 0.81%와 비교해 볼 때 0.68%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재해자수의 감소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역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여섯가지로 분류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급여는 현물급여(요양급여)와 현금급여(나머지 급여)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장애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재해형태별 급여지급의 내용 및 절차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시 재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장의비 및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반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우선 요양을 제공하고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상실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기간이 장기화되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치료 및 요양후 장애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장애급여(일시금, 연금)를 지급한다.

<그림-1> 산재보험 보상 과정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현물급여를 말하며, 이는 치료내용, 기간, 금액에 제한없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 전액(간병료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재 또는 진료 재료,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기타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질병일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즉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휴업급여는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중 1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로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휴업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장애급여 (일시금 및 연금)

장애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유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 정신적 및 육체적인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장애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는데, 일시금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장애등급 8~14급인 재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등급 4~7급인 재해자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012일분(4급)에서 55일분(14급)으로 차등화시키고 있다.

또한 연금의 경우는 장애등급 1~3급인 재해자에게 지급하고, 장애등급 4~7급인 재해자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여액 또한 평균임금의 329일분(1급)에서 138일분(7급)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만약 장애급여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 합계액이 일시금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4. 유족급여(일시금 및 연금)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유족급여도 장해급여와 마찬가지로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일시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의 경우는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연금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가산하게 되며, 지나친 연금 수급을 막기 위해서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6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장의비

장의비는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될 경우에 요양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여기서 폐질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44조)

상병보상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장해연금의 1~3급의 보상수준과 일치한다.

### 제 3 절 산재보험 제도 변화

#### 1. 적용 및 징수 제도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64개 사업장 8만 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꾸준히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표-2>에서 대상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을, 19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 시설업, 통신업을 추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임업 중 벌목업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추가되었다. 특히, 1989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1991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으며, 1998년 7월에는 금융·보험업까지 추가되었다. 최근에 와서 1999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주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영세사업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대상업종의 확대에 따른 대상사업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과 연인원 13,000인으로, 건설업의 적용규모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73년에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연간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1982년도에는 적용업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사업 및 건설공사 중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베니아판 제조업 및 목제품 제조업 등 34개 업종에 대해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1991년에는 광

<표-2> 기업규모별·업종별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이

연도	기업규모	업종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신설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 신설
1974	16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별목업 추가
1983	10(5)인 이상	농산물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추가
1986	10(5)인 이상	베니아관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5인 이상
1987	10(5)인 이상	목재제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5인 이상
1988	5인 이상	전자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 5인 이상
1991	5(10)인 이상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확대
1992	5인 이상	광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1996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8	-	금융보험업, 해외파견업
2000	1인 이상	중소사업주(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1999년)』, 2000. 6.

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10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1992년에는 이들 중 어업을 제외한 5개 업종에 대해 5인 이상까지 확대·적용되었다. 1994년도에는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현장에서 실습 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과 해외파견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금융·보험업에도 확대하다가 2000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표-3>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년도	사업장수(소)	전년대비증가율(%)	근로자수(명)	전년대비 증가율(%)
1966	594	-	222,456	-
1967	1,142	92.26	336,159	51.11
1968	2,389	109.19	488,628	45.36
1969	3,696	54.71	683,377	39.86
1970	5,588	51.19	779,053	14.00
1971	7,799	39.57	833,441	6.98
1972	9,375	20.21	1,077,632	29.30
1973	13,924	48.52	1,319,501	22.44
1974	17,551	26.05	1,517,787	15.03
1975	21,369	21.75	1,836,209	20.98
1976	28,445	33.11	2,269,796	23.61
1977	38,829	36.51	2,646,542	16.60
1978	49,957	28.66	3,105,757	17.35
1979	55,763	11.62	3,607,595	16.16
1980	63,100	13.16	3,752,975	4.03
1981	59,029	-6.45	3,456,746	-7.89
1982	54,159	-8.25	3,464,977	0.24
1983	60,213	11.18	3,941,152	13.74
1984	64,704	7.46	4,384,589	11.25
1985	66,803	3.24	4,495,185	2.52
1986	70,865	6.08	4,749,342	5.65
1987	83,536	17.88	5,356,546	12.79
1988	101,445	21.44	5,743,970	7.23
1989	118,894	17.20	6,687,821	16.43
1990	129,687	9.08	7,542,752	12.78
1991	146,284	12.80	7,922,704	5.04
1992	154,152	5.38	7,058,704	-10.91
1993	163,152	5.84	6,942,527	-1.65
1994	172,871	5.96	7,273,132	4.76
1995	186,021	7.61	7,893,727	8.53
1996	210,226	13.01	8,156,894	3.33
1997	227,564	8.25	8,236,641	0.98
1998	215,539	-5.28	7,582,479	-7.94
1999	249,405	15.71	7,441,160	-1.86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사업장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사업장수 증가율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까지 22년 동안 적용사업장수가 10만 개소 이하였지만, 1988~96년까지 9년 동안 적용사업장수는 20만 개소가 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이는 1998년에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1999년에는 다시 15.7% 증가하였다. 따라서 적용사업장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여기에 2000년 7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약 88만 개소)에 대한 확대적용에 따라 적용사업장수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근로자수는 1990년에 7백만명을 기록한 후 1999년까지 750만명에서 820만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적용근로자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약 165만명)으로 적용·확대함과 동시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중소사업주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향후 적용근로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9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36.7%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63.3%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시 이들 영세사업장 165만명의 근로자가 100% 산재보험에 가입·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률은 44.8%에 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업장수는 증가하나 근로자수는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 2. 보상제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는 1964년 시행 당시에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10일 이상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며, 1971년 제1차 개정시에는 지급대상을 8일 이상으로, 1982년 제5차 개정시에는 4일 이상으로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1) 산재보험정책연구회, 『산재보험정책연구』, 제3호, 30면.

휴업급여는 1964년 시행 당시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했으며, 1989년에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장해급여는 1964년 시행 당시에는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1970년 개정시에 장해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71년에 장해급여 등급을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하였으며, 등급별 급여기준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1989년 개정 이후 장해 1~3등급자에 대해 연금수급을 의무화하였고, 장해 4~7등급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급여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해 4~7등급자의 일시금 수급액 중 50%에 대해 연금수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유족급여 일시금의 경우 1964년 시행 당시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이었던 것을 1989년에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970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sup>2)</sup>의 100분의 47과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씩 합산하여 최대 20/100까지 합산)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1971년, 1977년, 1982년에 걸쳐 연금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다가 1999년에는 기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을 의무화되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급여 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의비는 1989년에 당초 평균임금의 90일분에서 120일분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가 1999년에 장의비의 최고·최저 금액을 설정하여 전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근로자 1인당 평균 장의비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득비례분으로 평균임금(최고·최저 보상 기준금액 적용)의 30일분을 합제한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상병보상연금은 1964년 시행 당시에는 일시금만 지급하다가 1982년에 일시금을 폐지하고 연금제도를 정착시켰다.

---

2) ‘급여기초연액’이란 재해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표-4> 산재보험 급여수준 개선현황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 의 비
1964.7.1 시행 (법 제정 1963. 11. 5)	지급대상: 11일 이상	평균임금의 60%  지급대상: 11일 이상	일시금: 최고(1급 1,000일본) 최저(10급 50일본)  일시급여: 1년 경과후 미완치시 평균임금의 1,000일본	일시금 평균임금의 1,000일본	평균임금의 90일본
1971.1.1 시행 (1차 개정 1970. 12. 31)	지급대상: 8일 이상	지급대상: 8일 이상	등급추가: 최고(1급 1,340일본) 최저(14급 50일본)  연금제 도입 대상: 1~3급 연금급여 수준: 1급(평균임금의 240일본) 2급(213일본), 3급(188)  일시급여: 2년 경과후 평균임금의 1,340일본	연금제 도입 유족수별 급여수준 (시행령 8차개정, 1971.11.19) 유족 1인(연소득의 30%) 유족 2인(35%) 유족 3인(40%) 유족 4인(45%)	
1977.12.19 시행 (4차 개정 1977. 12. 19)			연금급여 수준인상: 1급(평균임금의 279일본) 2급(248일본) 3급(219일본)	유족연금 수준인상 (시행령 개정 1978.2.13): 유족 1인(연소득의 45%) 유족 2인(50%) 유족 3인(55%) 유족 4인(60%)	
1982.1.1 시행 (5차 개정 19 81. 12. 17)	지급대상: 4일 이상	지급대상: 4일 이상	연금급여 수준인상: 1급(평균임금의 313일본), 2급(277) 3급(245) 4급(213) 5급(184) 6급(156) 7급(131)	유족연금 수준인상 (시행령 개정 1982.6.14): 유족 1인(연소득의 52%) 유족 2인(57%) 유족 3인(62%) 유족 4인(67%)	
1983.7.1 시행 (6차 개정 1982. 12. 31)		상병보상연금 제도 신설 (평균임금 기준) 1급(313일본) 2급(277일본) 3급(245일본)	일시급여 폐지		

<표-4> 계속

1989.4.1 시행 (9차 개정 1989. 4. 1)		휴업급여 수준인 상 평균임금의 70%	장해 1~3등급 연금수급 의무화  장해일시금 수준인상: 1급(1,474일본),2급(1,309), 3급(1,155) 4급(1,012) 5급(869) 6급(737) 7급(616) 8급(495) 9급(385) 10급(297) 11급(220) 12급(154) 13급(99) 14급(55)	유족급여 일시금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1,300일본	장의비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120일본
		상병보상연금수준 인상: (평균임금기준) 1급(329일본) 2급(291일본) 3급(257일본)	장해연금 수준인상: 1급(329일본) 2급(291) 3급(257) 4급(224) 5급(193) 6급(164) 7급(138)		
2000.7.1 시행	후유증상진 료제도도입		장해 4~7등급자의 일시금 수급액 중 50% 연금수급 의무화  간병급여 신설 간병급여수준: 상시간병(일 24,775원) 수시간병(일 16,516원)	유족 연금 의무화 - 100% 연금 수급 - 50% 일시금 수급, 50% 연금 수급	최고·최저 금액 설정

## 제 4 절 최근 제도 변경사항(2000. 7. 1)

### 1. 적용 및 징수 분야

#### 가. 적용 범위 확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중인 고용보험 등 타사회보험과 적용범  
위를 일치시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범위를 확대  
시켰다. 그러나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행정관리가 곤란하고 근로

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330㎡(약 100평) 이하의 개인 직영공사, 5인 미만 농·임·어·수렵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타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은 적용제외시키고 있다.

#### 나. 기준 임금 적용

이는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임금 확인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적용대상은 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 때 기준 임금은 고용보험 기준과 동일하도록 하여 월급의 경우는 723,000원으로, 시간급의 경우에는 3,2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 다.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와 함께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제한하였다. 이 때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액을 상·하한액으로 하여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등급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5> 보상기준액

	적 용 임 금 (월)	판 단 기 준
1 등급	722,000원	최저보상 기준금액
2 등급	1,050,000원	보험수지 달성 가능금액
3 등급	1,500,000원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4 등급	1,950,000원	사업주의 선택소득
5 등급	2,400,000원	사업주의 선택소득
6 등급	3,150,000원	사업주의 선택소득
7 등급	3,684,000원	최고보상 기준금액

## 2. 보상 분야

### 가. 간병급여제도 도입

현행 간병료는 요양 중에 지급하고 있어 요양 종결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증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으며,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 장애자로 하되 상시 간병이 필요한 자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로 구분하였다. 간병급여액은 요양 종결 후에 대부분 가족이 간병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간병료 수준으로 상시 간병급여는 일 24,775원으로, 수시 간병급여는 일 16,516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 나.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지급

산재근로자의 노동 가능 연령을 고려하여 일정연령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일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노동가능 연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기존 수급권자의 급격한 소득 저하를 막기 위해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법 시행 이전 재해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최근 고령자의 취업증가 추세 및 연령별 임금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대상은 65세 이상의 근로자로 하고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지급 비율을 65%로 낮추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감액대상 연령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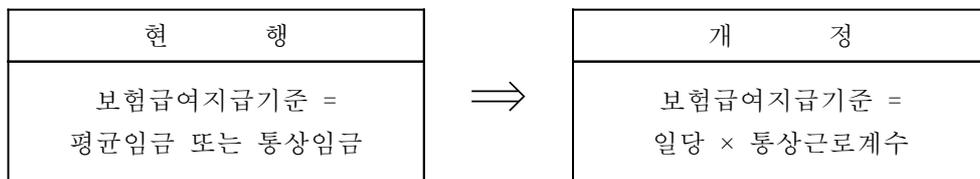
#### 다. 최고보상 기준금액 설정

각 급여별 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함으로써 피재근로자간 평균임금의 격차(최고·최저간 28배)가 보험급여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최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최고 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재해근로자간 급여격차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를 막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최고 보상한도를 직종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정할 경우 오히려 계층간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전 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자 분포비율, 임금상승률 등을 기초로 단일의 최고 보상한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일 평균임금을 49,760원으로 보고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일 122,807원으로 책정하였다.

#### 라. 통상근로계수 도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과 같이 실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실제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정방법(통상근로계수)을 마련하여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현 제도하에서는 월평균 15일 근로하면서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의 월소득은 150만원이나 재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월 21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상근로계수의 적용대상은 일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 하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마.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설정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된 실제비용 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수 소득 비례형태(평균임금의 120일분)로 지급되어 개인별, 소득계층별 및 직종별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최고·최저금액은 전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근로자 1인당 평균 장의비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득비례분으로 평균임금(최고·최저보상 기준금액 적용)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서 산출하도록 하였다.

<표-6>에서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제도 도입 이전에 최저 2,750,000원, 최고 36,000,000원으로 최저·최고 급여액간의 격차가 13배에 이르렀으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최저 5,638,130원, 최고 8,599,940원으로 격차가 1.5배로 상당히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향후 장의비 급여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6> 최고·최저금액 산출

(단위: 원)

	최저금액	최고금액
제도 도입 이전	2,750,000	36,000,000
제도 도입 이후	3,038,130	8,599,940
차 이	+288,130	-27,400,060

주: 1) 최고금액 산출과정

$$6,544,307\text{원}('99\text{ 1인 평균 장의비}) \times 90/120 + 122,807\text{원}(\text{최고보상 기준금액}) \times 30\text{일}$$

2) 최저금액 산출과정

$$6,544,307\text{원}('99\text{ 1인 평균 장의비}) \times 90/120 + 24,080\text{원}(\text{최저보상기준금액}) \times 30\text{일}$$

#### 바. 후유증상 진료제도 도입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통 완화 등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없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하여 중증 장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진료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은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상, 두부외상 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상, 골절에 따른 만성골수염, 관절염 등으로 세분화하고, 진료범위는 진찰, 검사, 투약 등이 포함되며,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인정하고 있다.

## 제 3 장

###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과거추이 및 전망

이 장에서의 수급자수는 요양급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사업연보 상의 수치를 사용하는 대신 주로 급여항목별 총지급액을 1인당지급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계산치)을 사용하였다.<sup>3)</sup> 요양급여 수급자수의 경우 1985년~1992년까지 이러한 계산치가 산재보험 사업연보의 수치와 매우 상이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사업연보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 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에서 보여주고 있다.

#### 제 1 절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수급자수 추이를 보면, 1965년 이후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조증가 하였으며 1978년에서 1980년까지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1984년까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4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1993년에는 부상자수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요양급여 수급자수의 급증을 유발시켰으나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괄목할 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산재 재해자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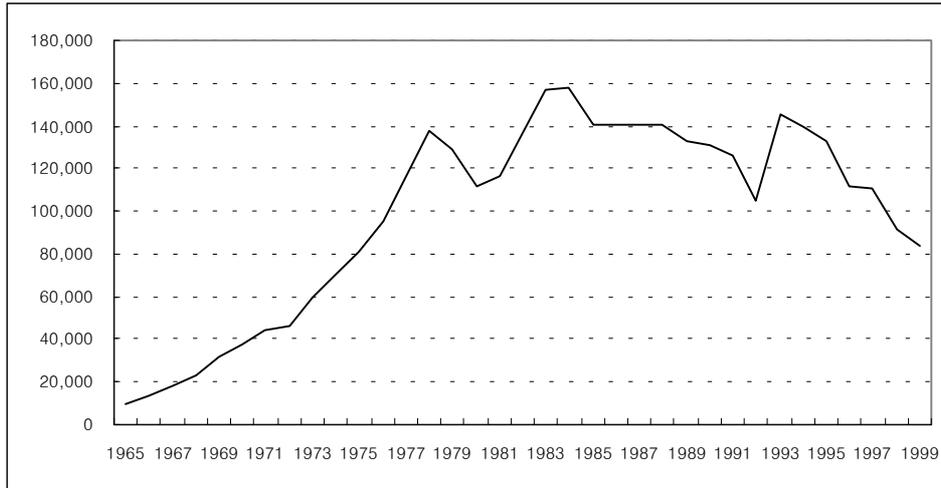
---

3) 이는 일부항목에 있어서는 수급자수에 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과거추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계산치를 생산하였다.

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1999년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 참조)

<그림-2> 요양급여 수급자수

(단위 : 명)



1인당 명목 급여액을 보면 1980년대 들어 지급액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상당한 증가추이를 보여왔다. 1990년대 전반에는 지급액의 상당한 변동을 보이다가 후반부터는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1995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GNP 디플레이터로 조정한 1인당 실질 급여액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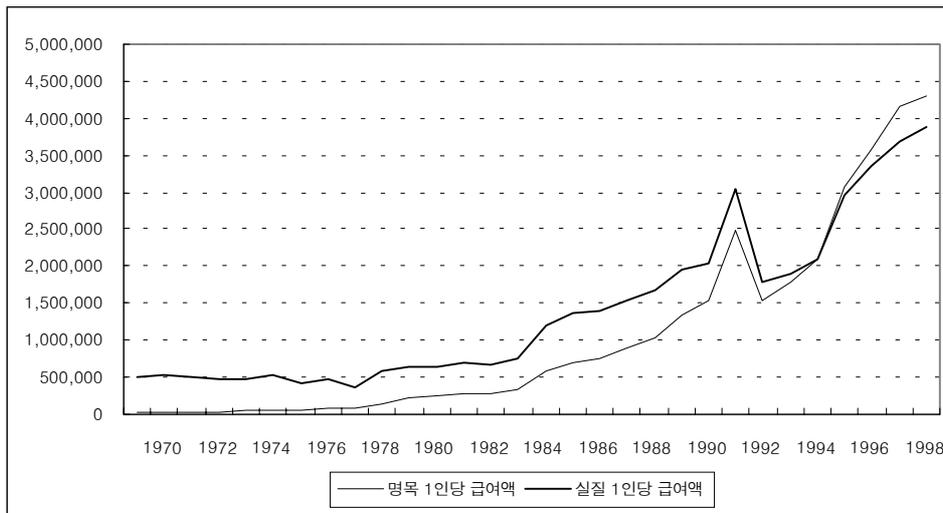
(<그림-3> 참조)

총요양급여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1인당 요양급여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에는 수급자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요양급여는 1인당 요양급여액 변동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총요양급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급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1995년도를 불변가격으로 한 총 실질 요양급여액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명목 급여액보다 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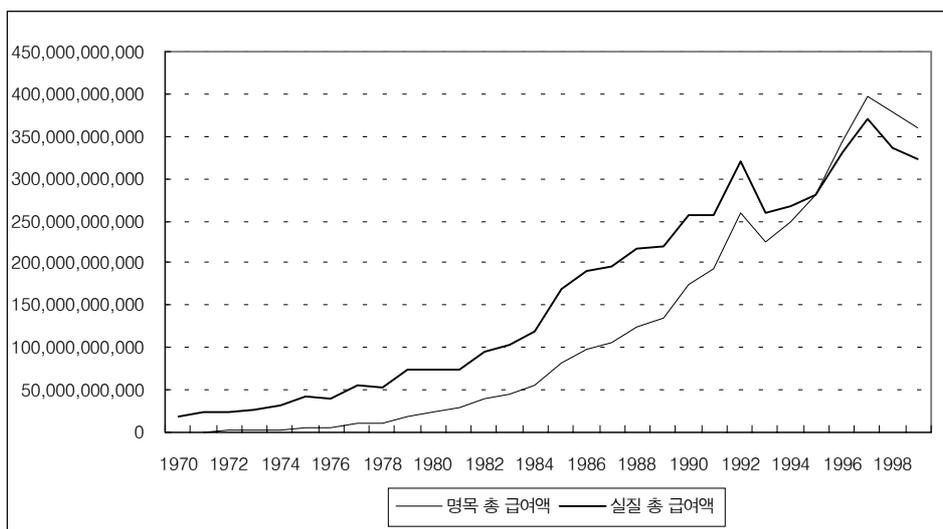
<그림-3> 요양급여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그림-4> 요양급여 총 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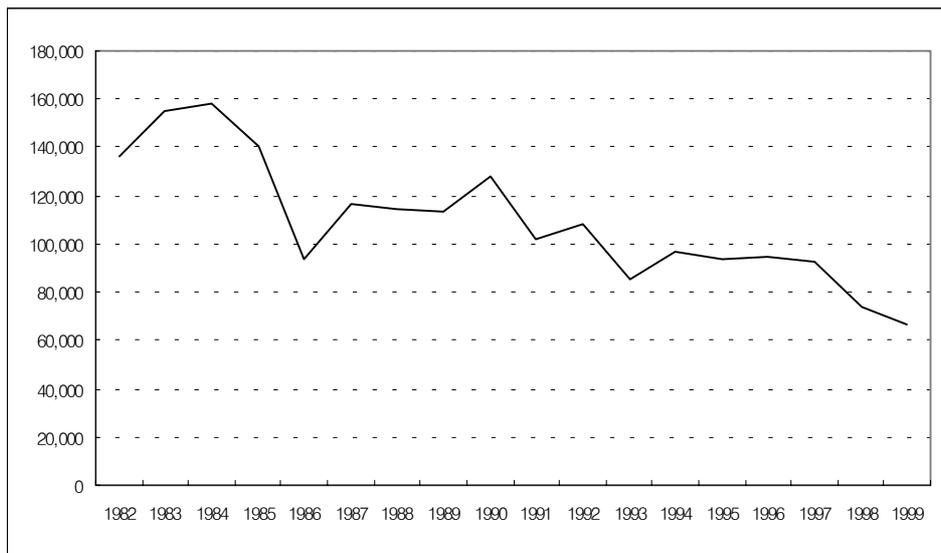


## 제 2 절 휴업급여<sup>4)</sup>

휴업급여의 수급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부분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1993년부터는 상병보상연금이 신설되어 폐질 등으로 인한 장기 산재환자의 휴업급여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휴업급여 수급자수는 전체 재해자수의 감소추세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감소유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최근 제도변경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확대·적용할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만큼 이러한 감소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5> 참조)

<그림-5> 휴업급여 수급자수

(단위 : 명)



1인당 급여액을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생산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명목임금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들어 1인당 휴업급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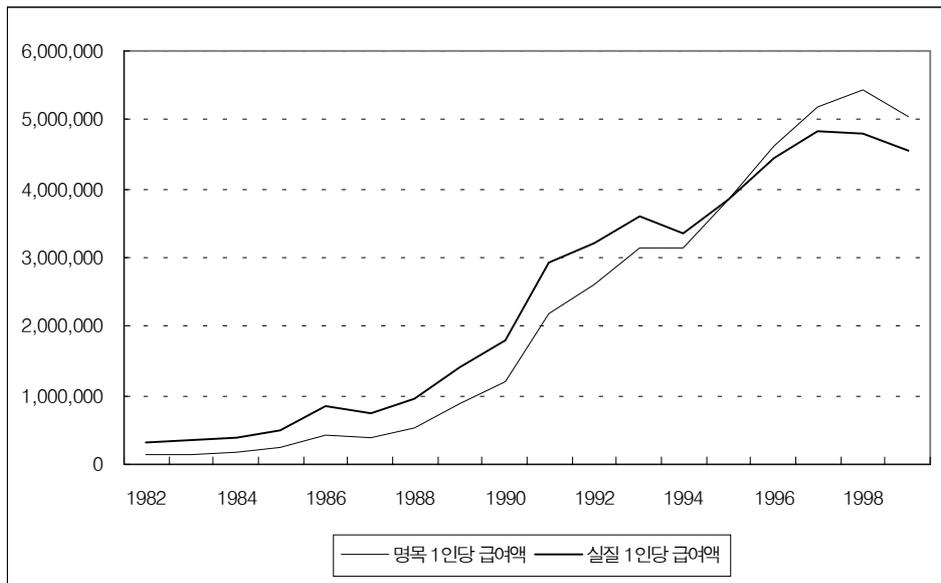
4)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1986년 이전의 1인당 자료가 없다.

자에 대한 임금감소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실질 휴업급여는 1996년까지는 대체로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림-6> 참조)

<그림-6> 휴업급여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총휴업급여액은 전반적으로 1993년을 제외하고는 상승했으며 특히, 1989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및 (평균)임금의 감소와 수급자수의 감소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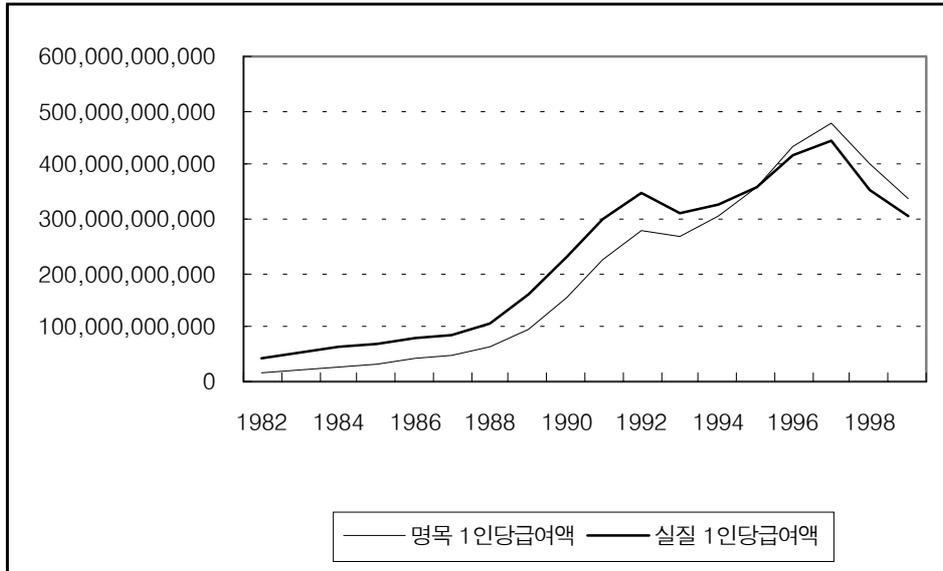
1인당휴업급여액의 경우 1998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명목수치는 약간 증가한 반면 수급자 수는 매우 큰 감소를 보였고, 1999년에는 양자가 모두 약간씩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총 휴업급여액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총휴업급여액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간 (1998년~1999년)은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2년간

에 걸친 재해율의 상당한 감소와 임금하락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7> 참조)

<그림-7> 휴업급여 총 급여액

(단위 : 원)



### 제 3 절 장해급여

#### 1.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에 대한 수급자수의 추이를 보면, 1992년까지는 극히 일시적인 소폭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71년 이후 1992년까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3년부터는 장해일시금 수급자수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996년과 1997년에는 일시적인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8년과 1999년에는 수급자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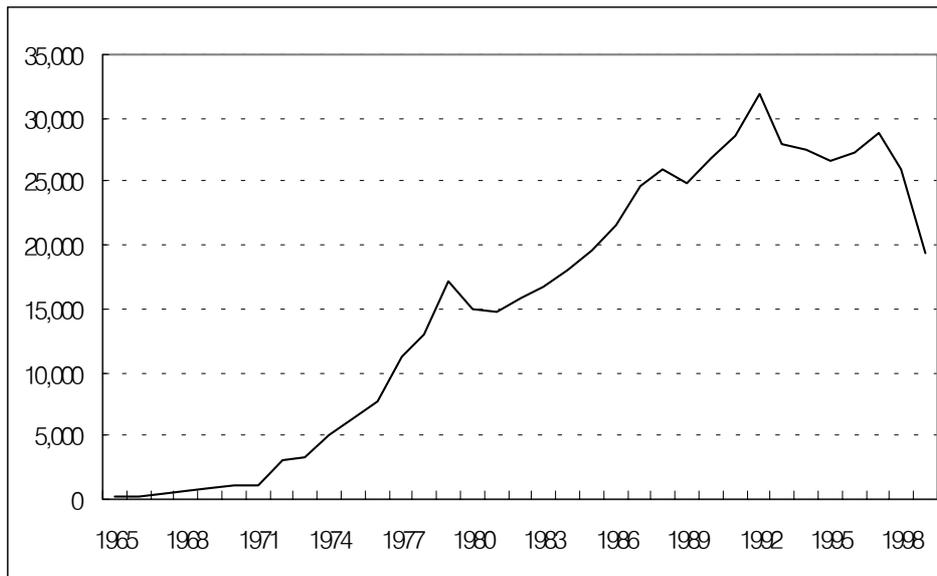
해발생률이 높은 건설노무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장해급여일시금 수급자가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는 장해연금 도입으로 말미암아 장해일시금 수급자의 일부가 점차 연금 수급자로 대체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장해일시금 수급자수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해연금 신규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장해일시금의 수급자수는 장해자수의 감소와 연금수급 의무화 등에 의한 대체효과가 작용하여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이나, 4인 이하에 대한 적용 확대의 영향으로 이러한 감소요인이 다소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8> 참조)

<그림-8> 장해일시금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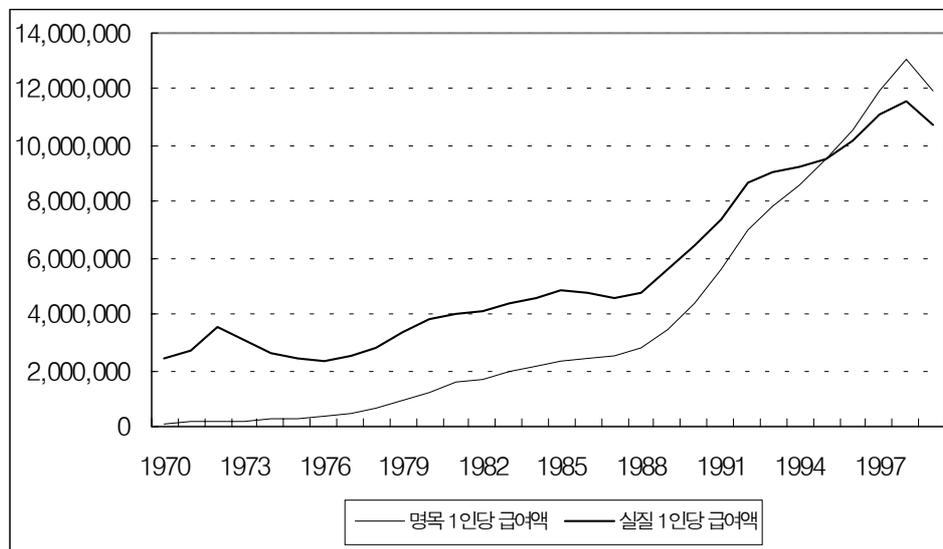
1인당 급여액의 경우, 1999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단조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간별로 증가율 자체의 뚜렷한 변동을 보여 왔다. 즉, 대체로 1965년~1977년, 1978년~1988년, 1989년~1998년의 3기간에 걸쳐 증가율

의 추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급격하게 상승해 왔으며 특히, 1989년 이후부터 매우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금상승률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급액의 현실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에 의해 조정된 실질 장해일시금은 1989년부터 괄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1999년에는 오히려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림-9> 참조)

<그림-9> 장해일시금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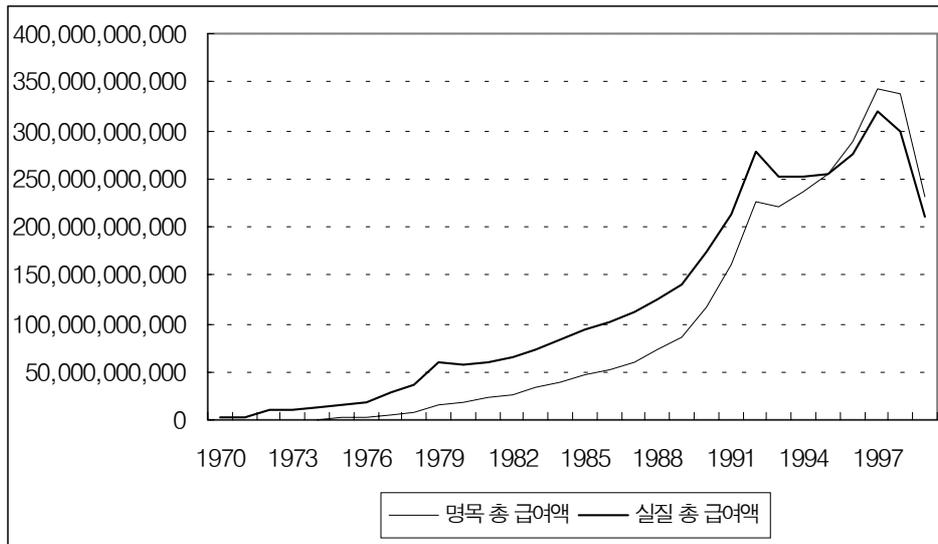
장해일시금 총급여액의 경우, 이러한 수급자수 및 1인당 급여액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3년도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대체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89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8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에는 매우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한 후의 실질 장해일시금 총액은 장해급여 수요자의 변동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즉, 1992년을 정점으로 1993년~1995년

까지는 다소 하락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1997년까지는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6.2% 정도의 비교적 작은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1999년에는 30.3% 정도의 매우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그림-10> 참조)

<그림-10> 장애일시금 총급여액

(단위 : 원)



## 2. 장애연금

<표-7>에서 장애연금의 수급자수를 보면 1995년~1999년까지 총수급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5)</sup> 신규수급자의 경우 1998년 및 1999년에는 증가세가 약간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1999년 기간 동안 장애연금 수급자수의 증가율은 신규수급자의 경우 55.7%이며, 총수급자의 경우 평균 123.7%이다. 연금수급이탈자는 아직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있어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장애연금 수급자수 및 1인당급여액에 대한 1995년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1995년~199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이기로 한다.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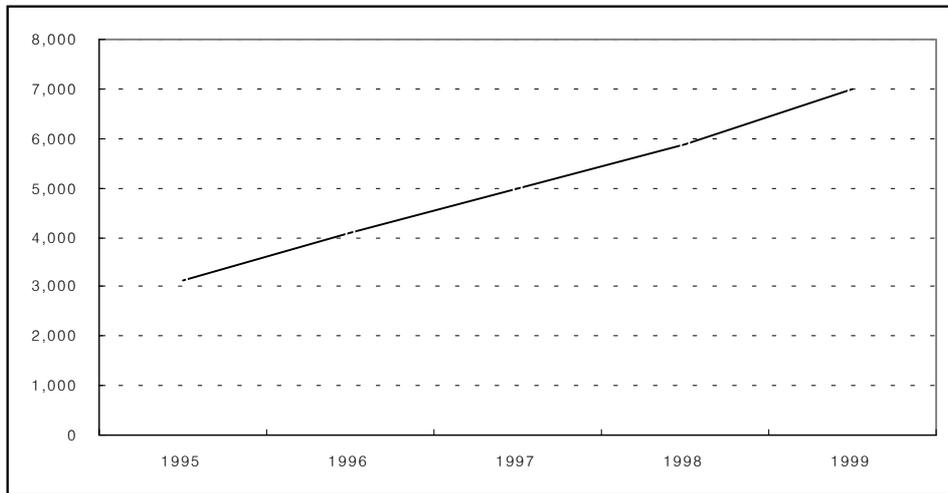
<표-7> 장해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년도	총수급자수	신규수급자수	연금수급이탈자
1995	3,124	912	-
1996	4,111	1,129	142
1997	4,989	1,329	451
1998	5,897	1,397	489
1999	6,989	1,420	328

<그림-11> 장해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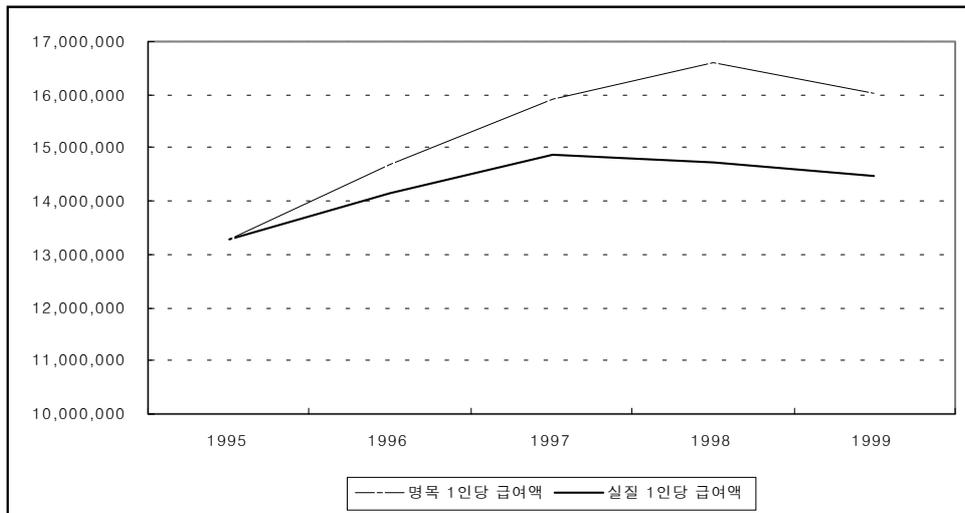
1인당 평균 장해연금을 보면, 1995년 이후 증가세가 미미한 둔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 와서는 3.47%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질장해연금급여액은 이미 1998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12> 참조)

장해연금 총급여액을 보면, 장해연금은 1989년 이후 매우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1992년~1995년에는 약간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6년부터는 더욱 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해연금은 연금수급의 의무화

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현 제도하에서는 장해연금제도의 성숙기까지는 장해연금의 이러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 장해연금은 대체로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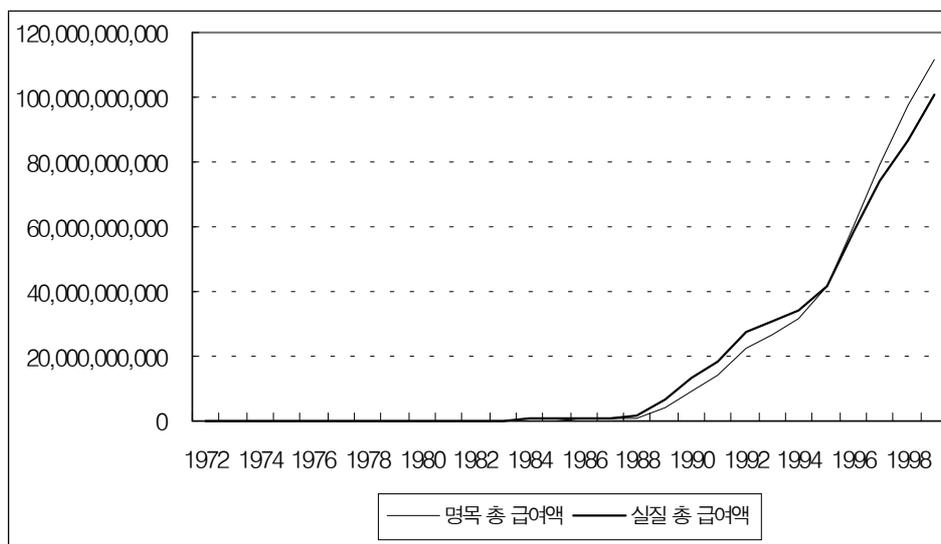
<그림-12> 장해연금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그림-13> 장해연금 총급여액

(단위 : 원)



## 제 4 절 유족급여

### 1. 유족일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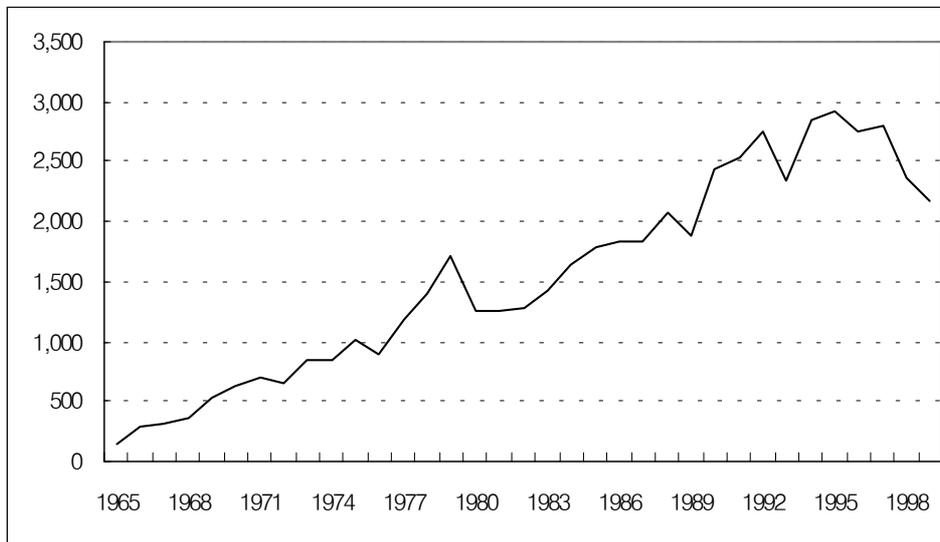
유족급여의 수급자수는 그 동안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1995년까지는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산재로 인한 사망자 증가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유족급여 수급자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1997년에는 사망률은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족일시금의 수급자가 평균적으로 다소 감소한 것은 유족연금 수급자로의 일부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1999년까지 수급자수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사망자수의 감소로 인한 유족일시금 수급자의 감소와 연금 수급자로의 일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14〉 참조)

〈그림-14〉 유족일시금 수급자수

(단위 : 명)



최근 사망자수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높은 건설 및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감축 등으로 인해 산재사망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7월부터 유족급여의 50%를 연금의 형태로 수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유족일시금의 지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급여액의 견지에서 보면, 유족급여도 장해급여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도 3기간에 걸쳐 증가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최근 1998년 및 1999년에 걸쳐 증가세가 괄목할 만하게 둔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해급여의 경우와 같이 3기간(1965년~1977년, 1978년~1988년, 1989년~1998년)에 걸쳐 증가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기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1989년 이후에는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9년에 유족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300일로(기존 1000일) 인상하여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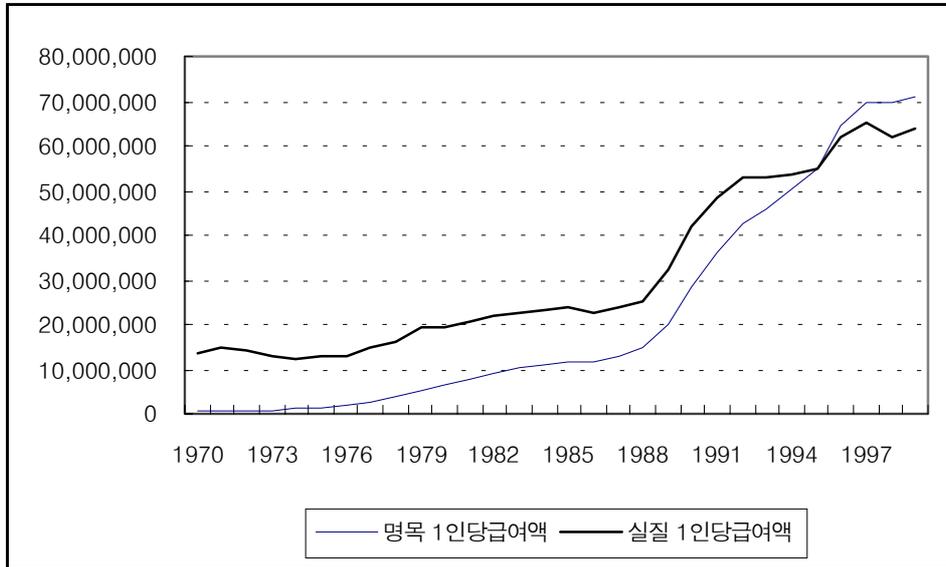
실질 1인당 급여액의 경우, 1978년 이전의 수준에서 1978년~1979년의 상승수준이 1988년까지는 거의 유지되었으나 1989년~1992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준이 1995년까지 지속되다가 1996년~1997년에는 또 다른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으나, 최근 2년(1998~1999) 동안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15> 참조)

유족일시금 총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1993년도를 제외하고는 상승하여 왔으며 1인당 급여액의 증가율이 위의 3단계의 기간에 걸쳐 차이를 보이듯이 유족일시금 총액도 단계별로 증가율이 상승해 왔다. 특히, 1989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1998년부터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실질 유족일시금 총급여액을 보면 1995년 이후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1998년의 급격한 감소에 이어 1999년에도 다소 감소하였다. 1999년의 유족연금 의무화에 따라 향후 연금지급이 일시금지급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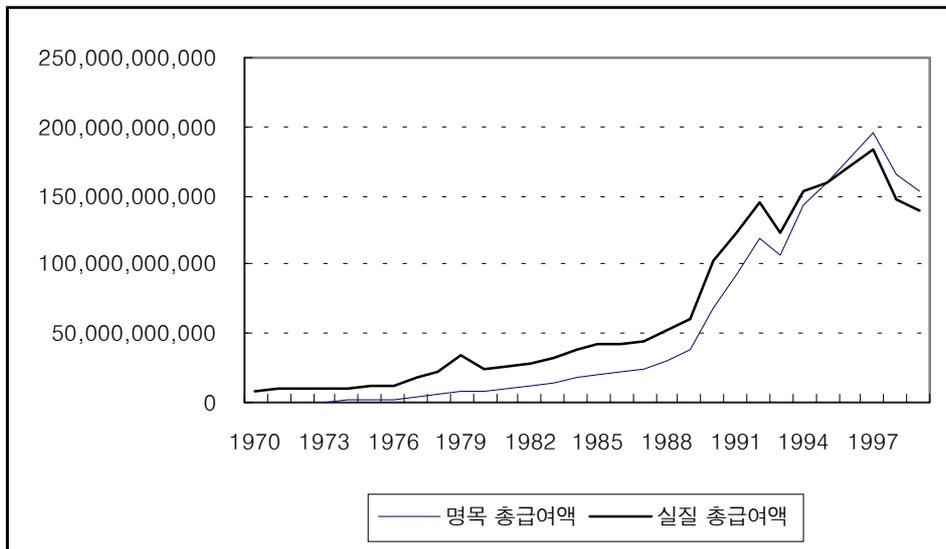
<그림-15> 유족일시금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그림-16> 유족일시금 총급여액

(단위 : 원)



## 2. 유족연금<sup>6)</sup>

<표-8>에서 유족연금의 수급자수를 보면, (유족연금) 총수급자수가 전체 수급자수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이기는 하나 신규수급자와 총수급자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금 이탈자수는 극히 미진한 것으로 보아 성숙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신규수급자수는 1995년~1999년 동안 192.3% 증가하였으며, 총수급자는 71.1%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신규수급자수가 일시적으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2000부터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총수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7> 참조)

<표-8> 유족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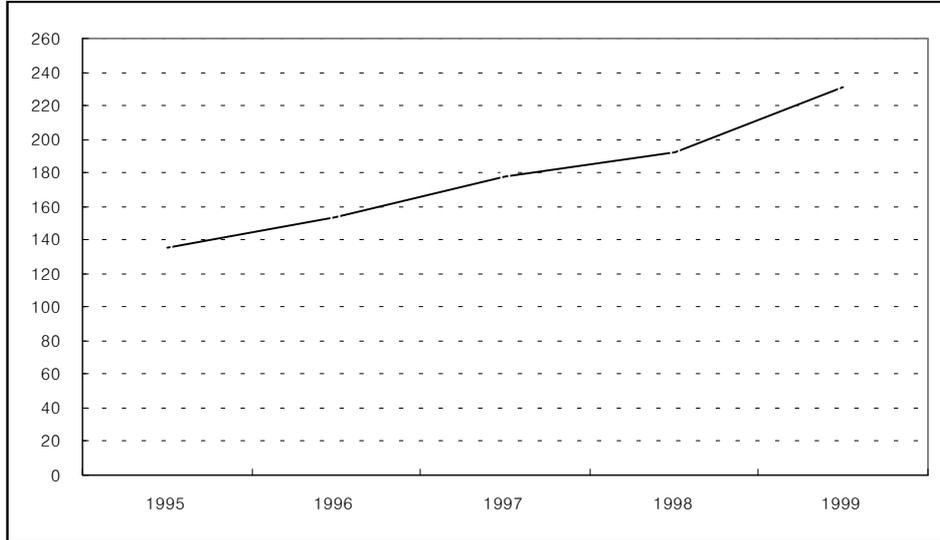
년도	총수급자수	신규수급자수	연금수급이탈자
1995	2,662	13	-
1996	2,670	23	4
1997	2,742	26	2
1998	2,212	16	2
1999	2,291	38	-1

유족연금의 1인당 평균 연금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1998년~1999년의 경우 1995년~1997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실질 1인당 급여액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나 좀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8> 참조)

6) 전체 연도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추세를 보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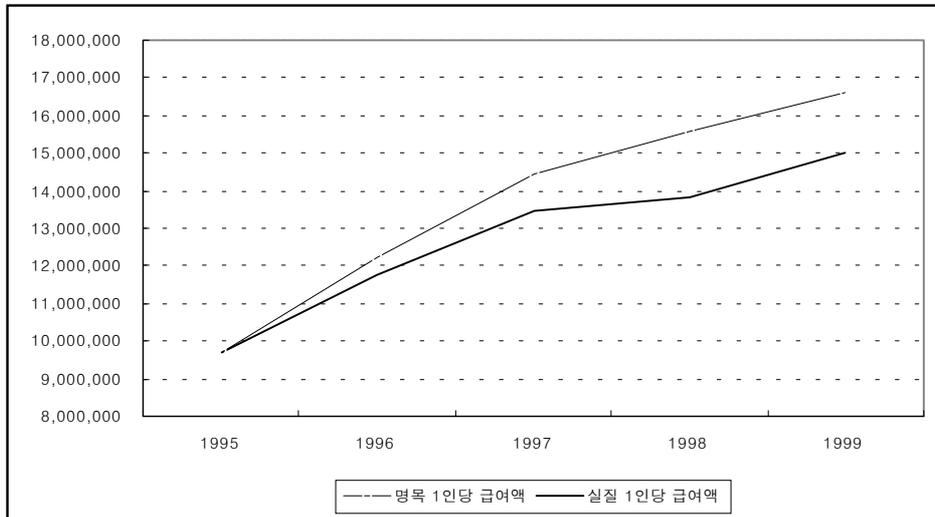
<그림-17> 유족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그림-18> 유족연금 1인당 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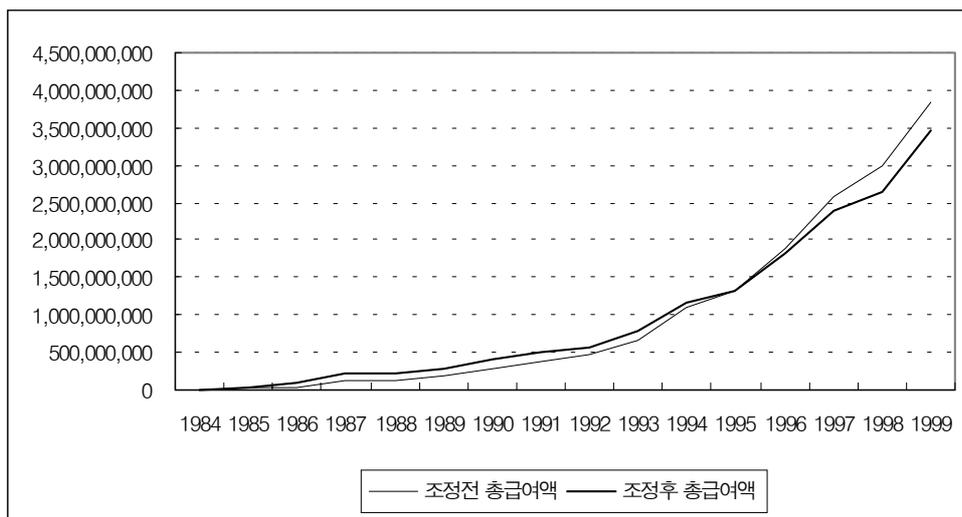


명목 유족연금 총액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은 상승세를 보여 1990년대 들어와서는 기하급수적인 증가형태(exponential curve)를 보이기 시

작하였다. 이는 유족연금의 수급자와 연금급여수준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9> 유족연금 총급여액

(단위 : 원)



1999년에는 유족연금을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유족연금은 더욱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유족연금 총액도 명목수치와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9> 참조)

## 제 5 절 장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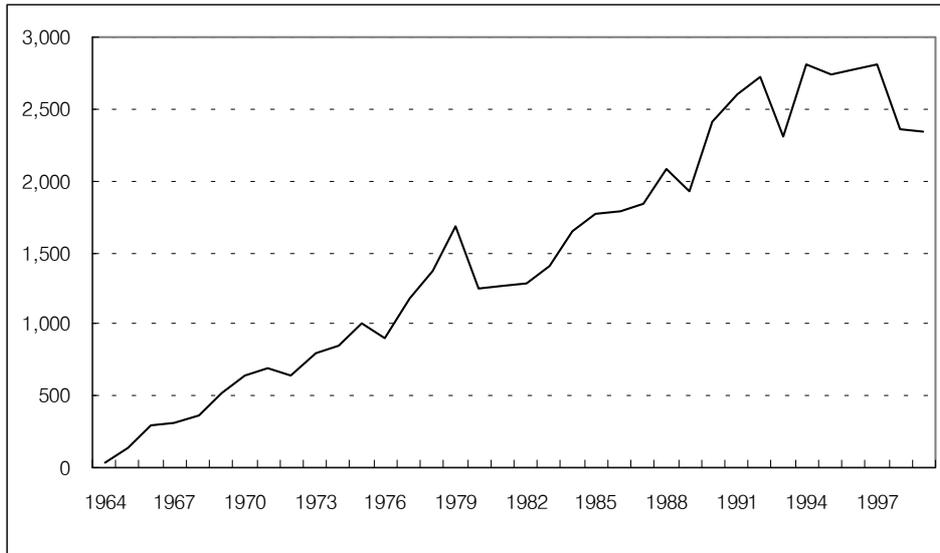
장의비의 수급자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에 사망자수가 급증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전후에는 일정수준에 머물다가 1997년 이후부터는 상당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사망자수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1993년 이후에는 사망자수의 변동과 일치하고 있다.

향후로는 사망률 수준에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주로 생산 및 건설경기과

더불어 이 분야 근로자 수의 증가 및 가동률의 증가 등에 따라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0> 참조)

<그림-20> 장의비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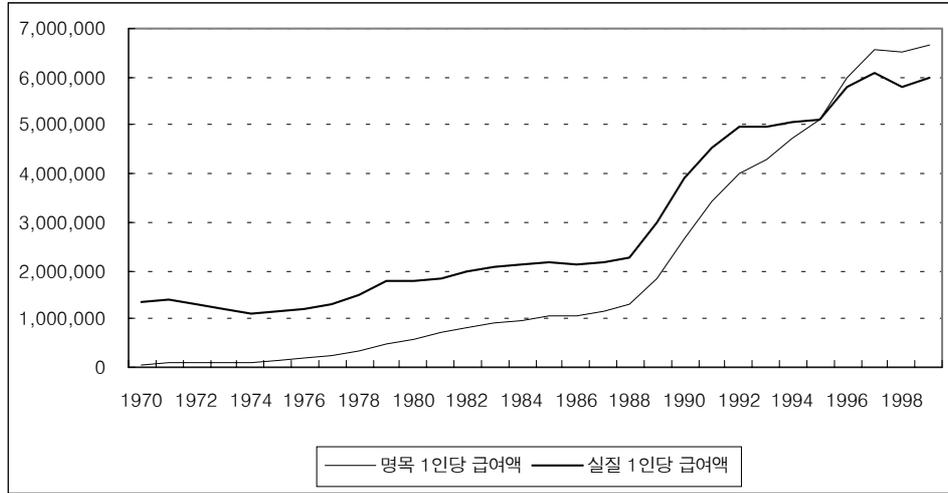
명목 1인당 급여액은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1998년 및 1999년)에 걸친 증가율 둔화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3기간(1965년~1977년, 1978년~1988년, 1989년~1998년)에 걸친 증가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실질 1인당 장의비의 경우, 대체로 몇 단계에 걸친 단계별 지급액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단계를 1977년 이전 수준에서 1977년~1978년간의 상승기를 거쳐 1979년~1988년의 수준, 1989년~1991년의 상승기를 거쳐 1992년~1995년간의 수준, 1996년~1997년의 상승기를 거쳐 1998년 이후의 수준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림-21> 참조)

명목 장의비 총액은 1990년 이후 대체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1998년~1999년 기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21> 장의비 1인당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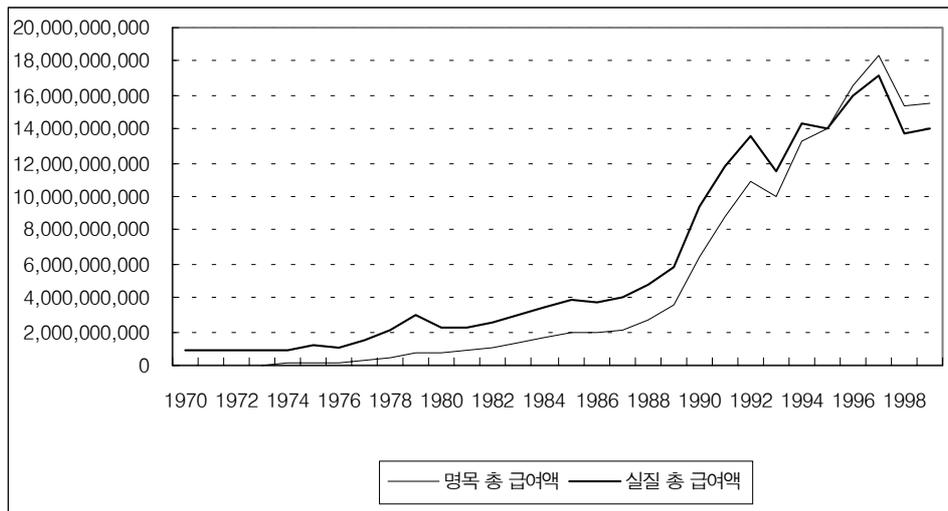
(단위 : 원)



실질 장의비 총액은 과거에는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9년~1992년에 걸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었으나, 1993년의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는 대체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최근 2년(1998년~1999년)간은 총장의비 지급수준이 상당히 하락한 채 유지되고 있다. (<그림-22> 참조)

<그림-22> 장의비 총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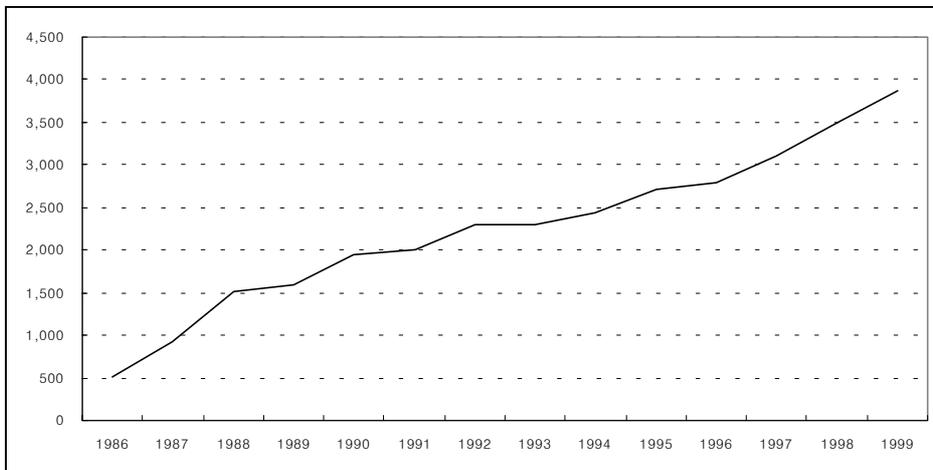
## 제 6 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수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증 재해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의 장기화 경향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양장기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상병연금 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재해자수에 대한 상병연금 수급자수의 비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 1998년에는 매우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1999년에는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최근에 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3> 참조)

<그림-23>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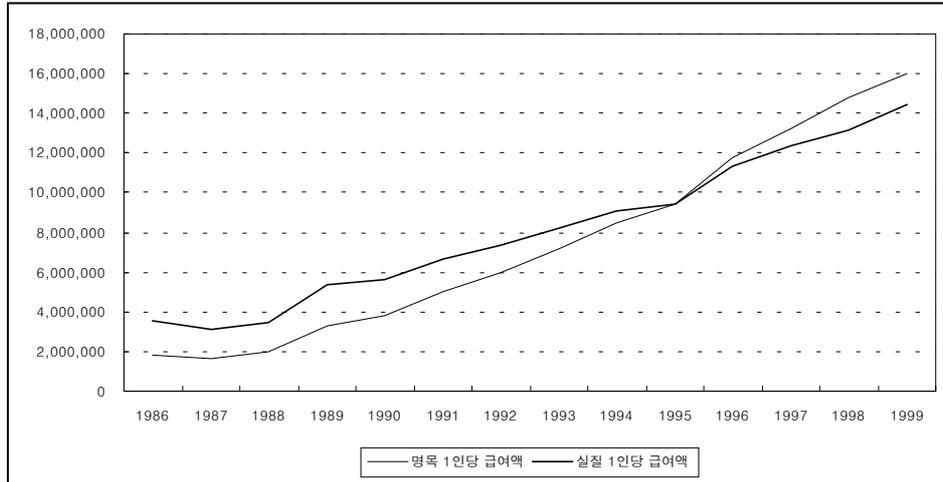
명목 1인당 상병보상연금급여의 경우 1986년 이후 그동안 지속적인 단조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증가율은 평균 약 19.1% 정도의 수준이다.

실질 1인당 급여액도 좀 더 완만한 경사를 보이기는 하나 동일한 형태의

증가추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24> 참조)

<그림-24> 상병보상연금 1인당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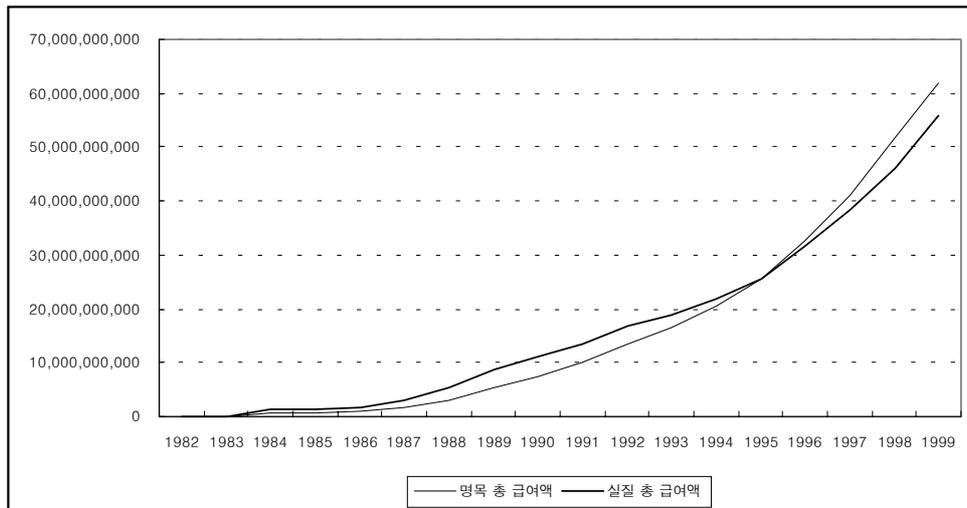
(단위 : 원)



명목 상병보상연금 총액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조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1995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가 더욱 더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25> 상병보상연금 총급여액

(단위 : 원)



실질 상병보상연금 총액도 좀 더 완만하기는 하나 이와 동일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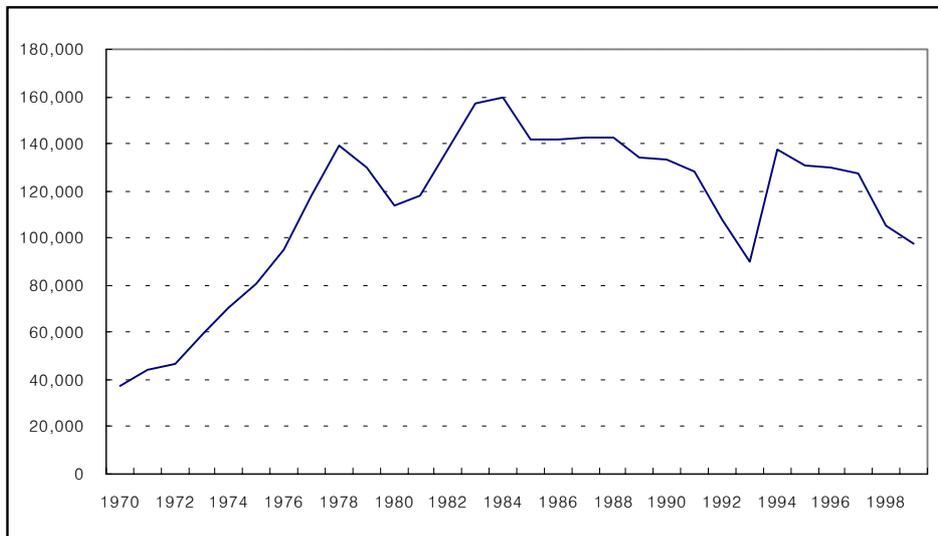
### 제 7 절 산재보험 총 급여액 추이

총보험급여액의 증가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1992년의 기간동안 1인당 보험급여액의 급격한 증가(217%)로 인해 총보험급여액 역시 동기간에 급격한 증가세(152%)를 보였다.

수급자수는 동기간 동안 하락하는 추세였다. 특히, 1991년~1993년의 기간 동안 수급자수는 상당한 감소(29.6%)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험급여액은 1인당 보험급여액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였다. (<그림-26> 참조)

<그림-26> 총 수급자수

(단위 : 명)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2년~1993년에는 1인당 급여액은 증가(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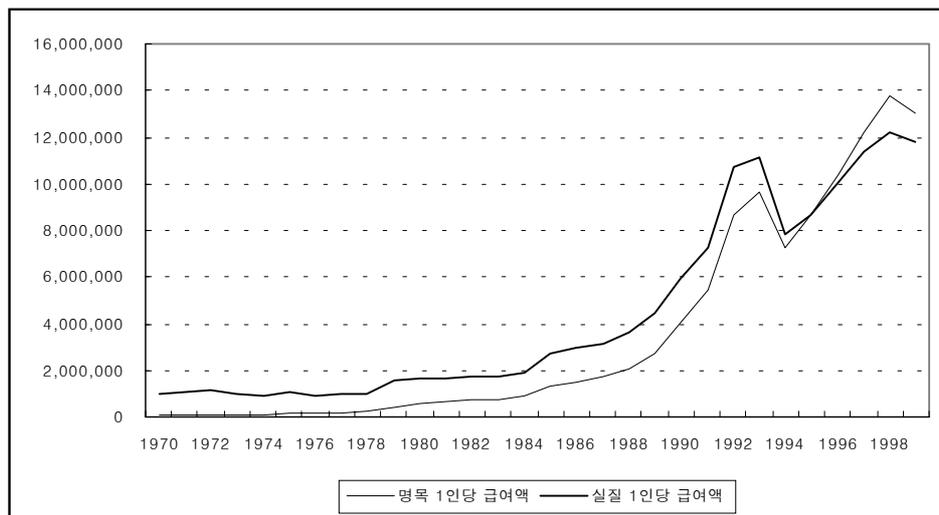
하였으나 수급자수의 감소(15.9%)로 인하여 총보험급여액은 다소 하락(6.3%)하였다. 반면에, 1993년~1994년에는 1인당 급여액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의 상당한 증가(51.9%)로 말미암아 총보험급여액은 증가(14.4%)하여 9,98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1994년~1997년 기간동안에는 수급자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인당 보험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67.6%)로 총보험급여액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실질 1인당 급여액의 추이도 명목 1인당 명목급여액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27> 참조)

1997년말의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총보험급여액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98년~1999년에 걸친 수급자수의 급격한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보험급여액의 경우 1998년에는 기존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수급자수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총보험급여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1인당 보험급여액과 수급자수가 동시에 감소하여 총보험급여액을 더욱 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총보험급여액의 추이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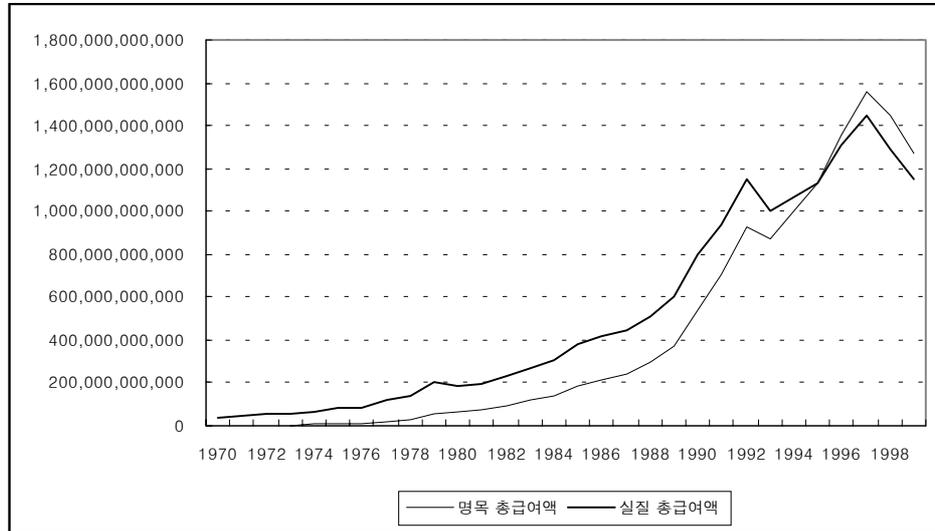
<그림-27> 총 1인당보험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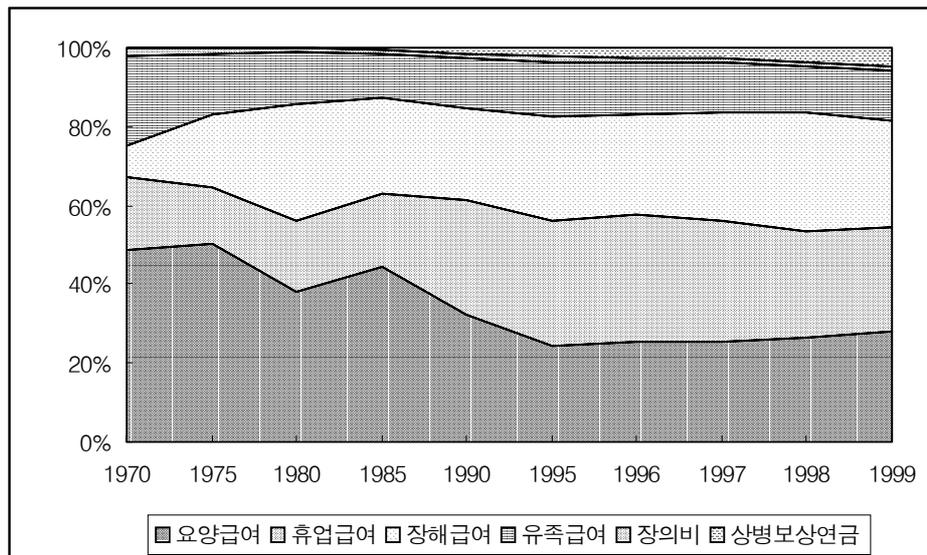
<그림-28> 총보험급여액

(단위 : 원)



<그림-29>와 <표-9>에서 총급여액에 대한 각 급여별 비중을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요양급여가 상당히 높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휴업 급여와 장애급여는 증가하고 유족급여는 감소하였다.

<그림-29> 항목별 총급여액 추이



1995년 이후에 감소하던 요양급여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외환위기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상병보상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의비의 경우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시금과 연금의 비중에 대한 특징은 일시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연금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95년 이후에 연금이 6% 정도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10.5%, 1999년에는 14%로 매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욱 더 선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9> 총보험급여액 현황

(단위 : 천만원, %)

년 도	총급여액	요 양 급 여	휴 업 급 여	장 해 급 여	유 족 급 여	장의비	상병보상 연 금	일시금	연금*
1970	184 (100)	90 (48.9)	34 (18.5)	14 (7.6)	42 (22.8)	4 (2.2)	-	184 (100)	- (0.0)
1975	1,038 (100)	520 (50.1)	148 (14.3)	196 (18.9)	159 (15.3)	15 (1.4)	-	1,038 (100)	- (0.0)
1980	6,250 (100)	2,398 (38.3)	1,104 (17.7)	1,862 (29.8)	811 (13.0)	73 (1.17)	2 (0.03)	6,247 (99.9)	3 (0.1)
1985	18,599 (100)	8,237 (44.3)	3,443 (18.5)	4,587 (24.7)	2,075 (11.1)	187 (1.0)	70 (0.4)	18,495 (99.4)	104 (0.6)
1990	53,935 (100)	17,363 (32.2)	15,603 (29.0)	12,632 (23.4)	6,951 (12.9)	637 (1.1)	749 (1.4)	52,262 (96.9)	1,673 (3.1)
1995	113,357 (100)	27,942 (24.6)	35,798 (31.6)	29,570 (26.1)	16,093 (14.2)	1,398 (1.2)	2,556 (2.3)	106,521 (94.0)	6,836 (6.0)
1996	135,533 (100)	34,297 (25.2)	43,572 (32.4)	34,776 (25.6)	17,950 (13.2)	1,660 (1.2)	3,278 (2.4)	126,025 (93.0)	9,508 (7.0)
1997	155,604 (100)	39,674 (25.5)	47,864 (30.8)	42,247 (27.1)	19,864 (12.8)	1,837 (1.2)	4,118 (2.6)	143,284 (92.1)	12,320 (7.9)
1998	145,106 (100)	37,967 (26.2)	39,988 (27.5)	43,563 (30.0)	16,870 (11.6)	1,539 (1.1)	5,179 (3.6)	129,837 (89.5)	15,269 (10.5)
1999	127,422 (100)	35,870 (28.2)	33,739 (26.4)	34,379 (27.0)	15,774 (12.4)	1,452 (1.1)	6,208 (4.9)	109,631 (86.0)	17,791 (14.0)

주 : \*는 장해연금, 유족연금, 상병보상연금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 제 4 장

### 산재보험중장기 재정추계

#### 제 1 절 재정추계 개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재정 중 급여부분에 대한 추계에 국한하기로 하며 전체적인 급여추계에 있어서 기본개념 및 이에 따른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급여부분에 대한 추계는 먼저 급여항목별 수급자수에 대한 예측을 한 후 1인당 수급액에 대한 장기 전망치를 이용하여 총급여액을 추계하기로 한다. 연금지급에 대한 추계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자료상의 한계와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지급액 추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추계방법을 다소 달리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수급자수 등에 대한 예측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사용하기로 한다.

급여별 수급자수는 기본적으로는 아래 식(1)과 같이 총재해자수에 대한 급여항목별 수급자수의 비율(이하 재해율비중)에 의해 산출된다. 장래의 각 연도별 급여별 수급자수는 재해율비중의 과거추이(trend)를 이용하여 예측해보기로 한다.

$$\text{급여별 수급자수}(i) = \text{총재해자수}(i) \times \text{급여항목별 재해율비중}(i) \cdots (1)$$

(i는 추계대상 연도를 나타냄.)

1999년~2000년에 걸친 대폭적인 제도변경 사항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정확한 재정추계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주요변수의 경험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총급여액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은 적어도 몇 년간의 경험치가 축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예측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수급자수에 대한 예측의 경우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및 연금수급 의무화 등에 따른 연금수급에 대한 예측치를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최근 제도변경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추계는 어느 정도 경험적인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 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순한 방향제시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급여항목별 수급자수, 총급여액에 대한 자세한 추계는 <부록>에서 보여주고 있다.

## 제 2 절 총재해자수 추계

총재해자수는 적용근로자수에 재해율을 곱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i) 장기적인 적용근로자수를 추정한 후, ii) 재해율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과거 추세로부터 예측함으로써 이들 수치의 연도별 곱을 통하여 총재해자수를 추계해 보기로 한다.

### 1. 적용근로자수

적용 근로자수 추이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을 이용하여 자연증가율을 상정하였으며 제도적인 요인에 의한 적용근로자수의 증가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에 대한 추산치를 반영하였다.

$$\text{적용근로자수} = \text{기본 적용근로자수} + \text{매년도 자연증가(인구성장)분} \\ + 4\text{인 이하 적용확대부분}$$

<기본(4인 이하 미포함) 적용근로자수>

1998년과 1999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1997년까지의 적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의 적용근로자수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기간을 반영하고자 추세수준에 대해 각각 보간법(2개년 평균)을 사용하여 조정하였다.

· 2000년 적용근로자수 : (1999년 + 2001년) / 2

· 2001년 적용근로자수 : (2000년 + 2001년) / 2

<4인 이하 적용근로자수>

4인 이하 적용 근로자수는 현재 약 165만명(1,646,502명)으로 가정하였다.<sup>7)</sup>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인 이하 근로자는 2000년도 65%, 2001년도 15%, 2002년도 10% 등의 비율로 증가하여 단계적으로 90%까지 가입·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으로 매년도 마다 자연증가율만큼만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인구증가에 의한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은 장래인구추계<sup>8)</sup>에서 2030년까지 추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0년의 적용근로자수는 4인 이하 적용근로자 165만명의 65%와 자연증가분을 합쳐 108만명이 증가하여 총 899만명으로 추계되었으며, 2001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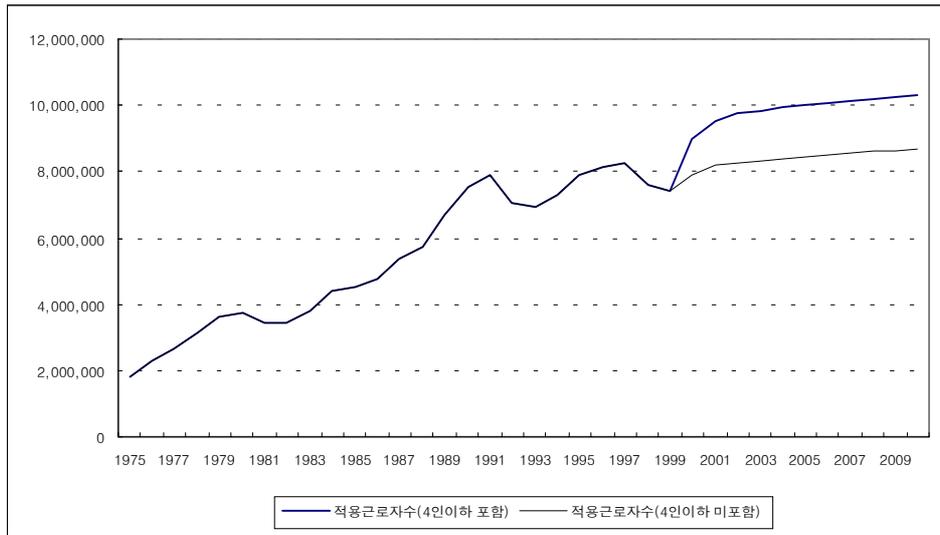
7)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요율 결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12 참조.

8)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6.12), 참조.

15%와 자연증가분을 합쳐 26만명이 증가하여 총 953만명으로 추계되었다. 2002년까지 165만명의 90%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2년에는 977만명, 2006년에는 1,006만명, 2010년에는 1,030만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림-30> 참조)

<그림-30> 적용근로자수

(단위 : 명)



## 2. 총재해율

총재해율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과거추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즉, 기본적으로는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적합도가 가장 높은 추세선을 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노동부에 의해 제시된 장기추세<sup>9)</sup>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추세선으로 추정하였다.

$$0.35 + \text{EXP}(302.783198 - 0.151982 \times \text{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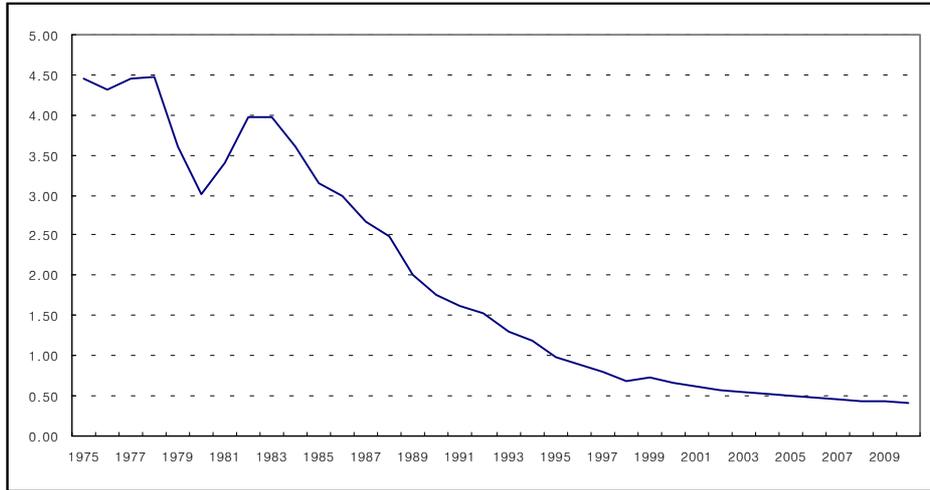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향후 재해율은 2000년에 0.66, 2005년에 0.49, 2010년에는 0.42

9)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안)』 (2000년~2004년, 노동부) 참조.

로 추정되었다. (<그림-31> 참조)

<그림-31> 재해율

(단위 : %)



### 3. 총재해자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재해자수에 대한 추계는 향후 적용근로자수에 대한 추계치에 재해율에 대한 추정치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총재해자수에 대한 추계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에 따른 재해자수의 예상증가가 반영되었다.

적용근로자수의 증가와 재해율의 감소를 감안해 보면 2000년에는 59,000명, 2005년에 49,000명, 2010년에는 42,000명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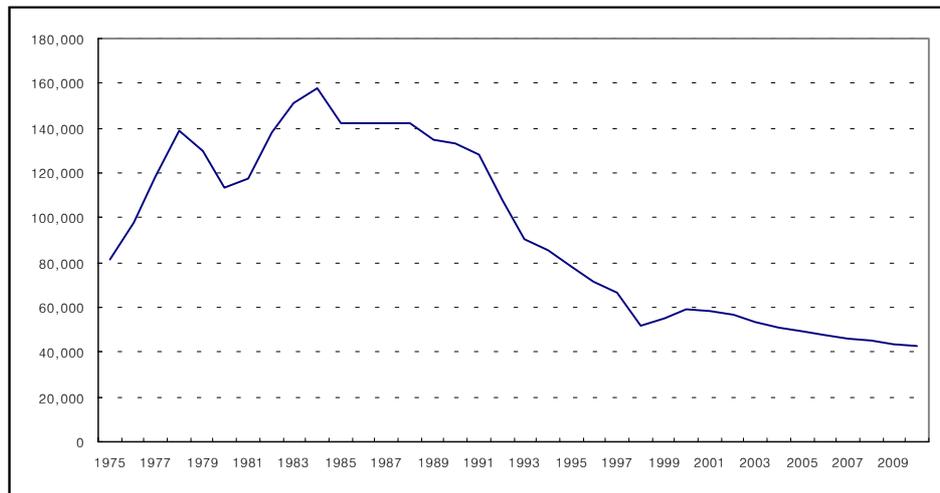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 등으로 인하여 재해자수의 수준이 현재의 추세보다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았다.<sup>10)</sup> 4인 이하 사업장은 최근에 와서 사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형

10)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재해율을 5~9인 사업장의 재해율로 대체하여 추계를

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재해율을 추정 또는 가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32> 참조)

<그림-32> 총재해자수

(단위 : 명)



### 제 3 절 급여항목별 수급자수 중장기추계

위의 식(1)에서 급여항목별 재해율(비중)은 각 급여항목별로 총재해자수에 대한 급여항목별 수급자수 비율의 과거추이를 기준으로 향후 재해율의 진전 방향 및 수준 등을 추이(trend)에 대한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하였다. 이러한 비율추이에 의한 장래 추정치를 총재해자수에 대한 급여항목별 ‘재해율비중 추계’라 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먼저 1975년~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급여항목별 수급자수를 총재해자수로 나눈 재해율비중의 추이는 다음의 식 (2)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이를 이용하여 향후 약 10년에 걸친 재해율비중

---

시도해 보았으나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을 무시하기로 하였다.

을 과거추이(trend)를 이용하여 예측해 보기로 한다.

$$\text{재해율비중}(i) = \text{급여항목별 수급자수}(i) / \text{총재해자수}(i) \quad \dots \dots (2)$$

여기서, 과거 수급자수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급여항목별 총지급액을 1인당지급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사용하였다. 일정연도 이전의 과거에 대한 수급자수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자료의 확충을 위해 이러한 계산에 의해 수급자수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요양급여의 경우 1985년~199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산치가 산재보험 사업연보의 수치와 매우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 수급자수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문제시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사업연보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각 급여항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그 문제의 정도가 상당히 낮으므로 계산치를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율 비중의 추이를 각 급여항목별로 산출해 보면 급여액의 추이가 항목별로 지금까지 다소 상이하게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제도변화의 내용이 각 급여항목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각 지급항목별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른 모형 또는 방법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환위기 이후 여러 관련변수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움직임의 방향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재정추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통계학적인 분석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일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욱 중시 다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추계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변수들의 단기적인 이상 움직임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일부 추계치에 대해 전후년도의 평균치에 의해 조정하거나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도 하였다.

산재보험 각 지급항목별 수급자수에 대한 2010년까지의 장기적인 추계치를 산출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식(1)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장래 연도별 재해율 비중의 추계치를 연도별 총재해자수에 대한 추계치에 곱함으로써 각 지급항목별 장래 수급자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장해연금 및 유족급여(일시금,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수급자수 추계치 산출과정에서 자세히 상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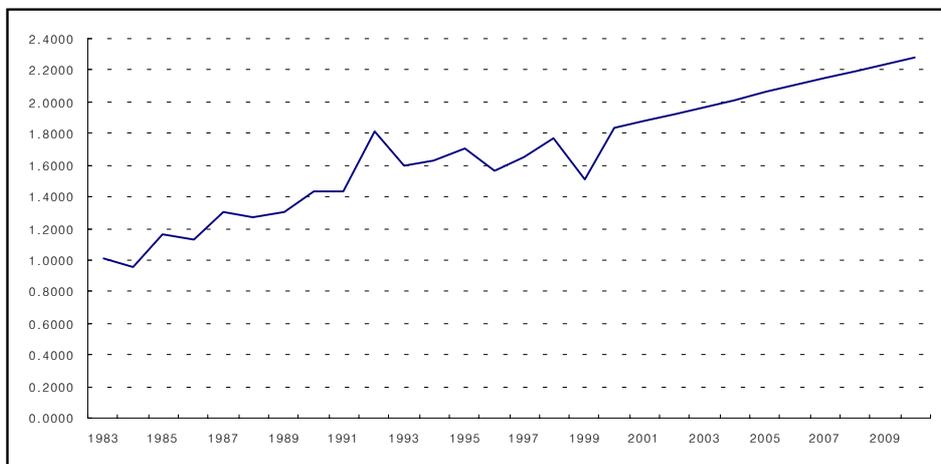
### 1. 요양급여 수급자수

요양급여 수급자수의 재해율 비중<sup>11)</sup> 추계는 과거 1983년~1999년간의 재해율비중 자료를 사용하여 추이(trend)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식에 의해 추계하였다. (<그림-33> 참조)

$$-88.65736 + 0.045245 \times \text{Year}$$

<그림-33> 요양급여 비율

(단위 : %)



이러한 재해율 비중에 대한 추계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수급자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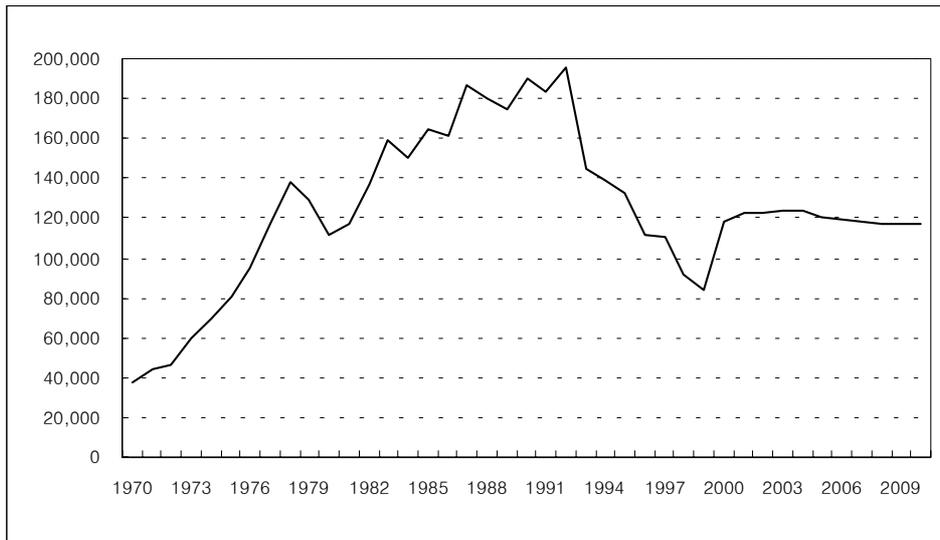
11) 각 급여별 재해자수의 재해율 비중은 p.64의 식(2)를 참조하기 바람.

요양급여 수급자수 :

총재해자수 추세치(i) × 요양급여 재해율 비중 추세치(i)

<그림-34> 요양급여 수급자수

(단위 : 명)



## 2. 휴업급여 수급자수

휴업급여 수급자수의 재해율 비중 추세는 일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거 1982년~1999년 동안의 재해율비중 자료를 사용하여 추이(trend)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식을 얻었다. (<그림-35> 참조)

$$-54.41263 + 0.027852 \times \text{Year}$$

<그림-35> 휴업급여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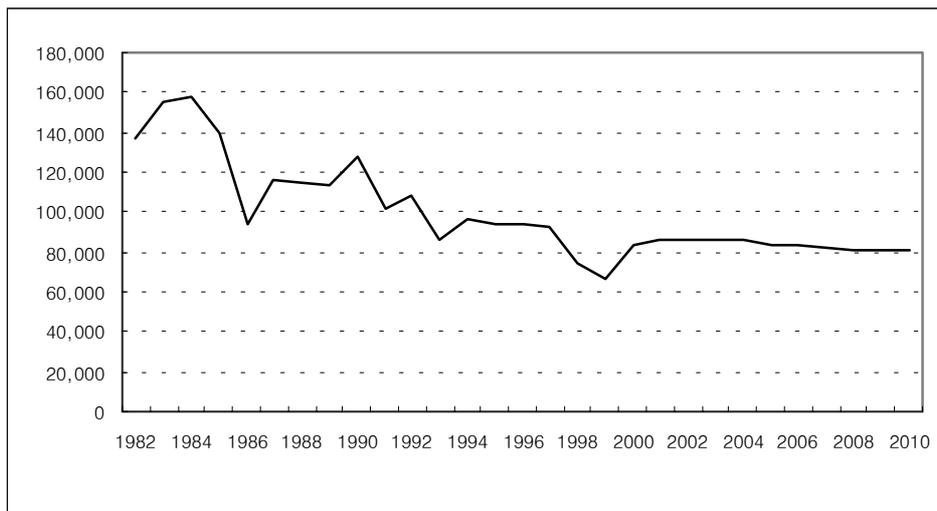
이에 따라 휴업급여 수급자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으며 <그림-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휴업급여 수급자수 :

총재해자수 추계치(i) × 휴업급여 재해율비중 추계치(i)

<그림-36> 휴업급여 수급자수

(단위 : 명)



### 3. 장해일시금 지급자수

장해일시금 지급자수의 재해율 비중 추계는 과거 1975년~1999년간의 재해율비중 자료를 사용하여 추이(trend)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식을 얻었다. (<그림-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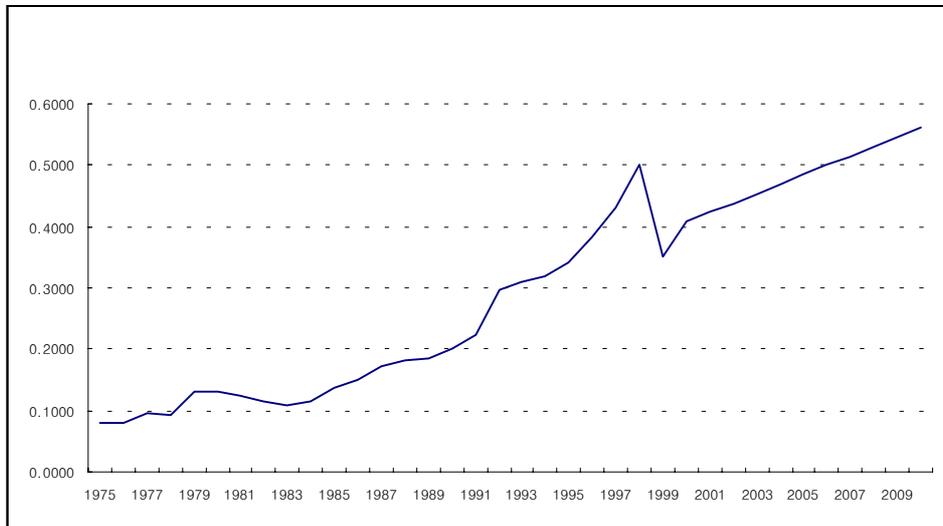
$$-29.91951 + 0.015164 \times \text{Year}$$

단, 2000년, 2001년에 대한 추정치는 보간법(2개년 평균)을 사용한 전후 연도의 평균치에 의해 조정하였다.

- 2000년 지급자수 : (1999년 + 2001년) / 2
- 2001년 지급자수 : (2000년 + 2002년) / 2

<그림-37> 장해일시금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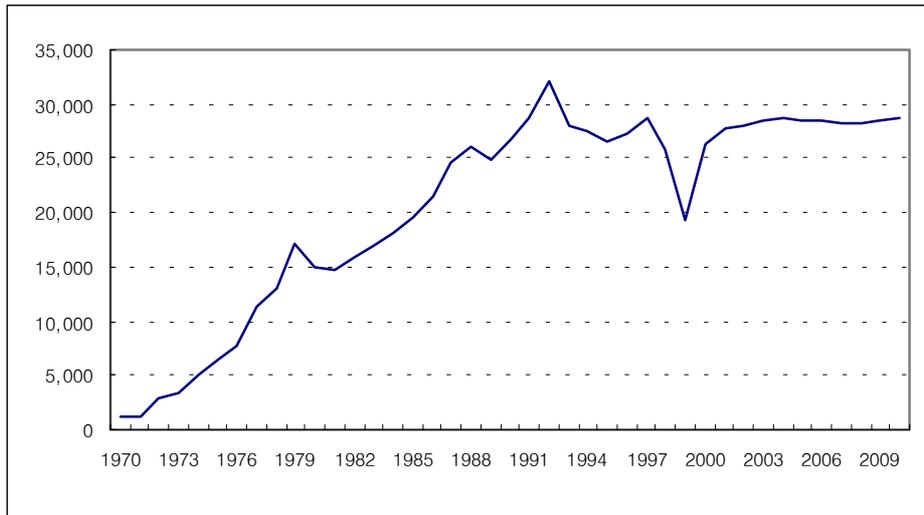
이에 따라 장해일시금 지급자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장해일시금 수급자수 :

총재해자수 추계치(i) × 장해일시금 재해율비중 추계치(i)

<그림-38> 장해일시금 수급자수

(단위 : 명)



#### 4. 장해연금 수급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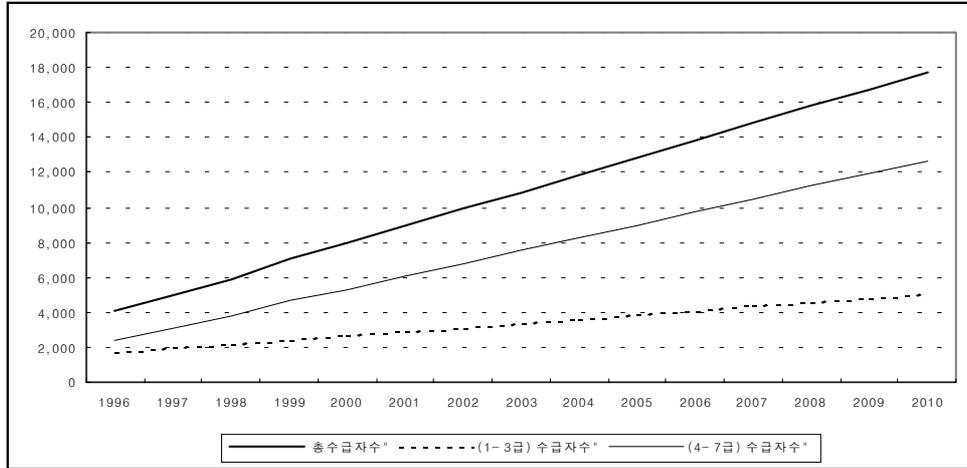
장해연금 수급자수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제한 및 향후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려 등에 의해 이러한 재해율비중 추계에 의존하지 않고 장해등급별 최근 수급자수의 추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추계하기로 한다. 연금 수급자수에 관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화된 자료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최근 1996년~1999년까지 자료의 평균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하기로 하였다. 단, 장해연금 수급자수의 경우 1~3급과 4~7급간의 추세가 상당히 다르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추정해 보기로 한다.

1~3급 및 4~7급 수급자수에 대한 1996년 - 1999년 데이터를 이용한 추세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3급 장해연금 추계식 :  $-479958 + 241.3 \times \text{Year}$
- 4~7급 장해연금 추계식 :  $-1467291 + 736.3 \times \text{Year}$

<그림-39> 장애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 5. 유족급여(일시금+연금) 수급자수

유족급여의 수급자수도 일시금 및 연금에 대한 재해율 비중에 대한 추계를 거치지 않고 총수급자수의 추이를 이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유족급여의 경우 2000년 7월의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한 향후 수급자수를 추계하기 위해 유족일시금과 수급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총수급자 = 일시금 수급자 + 연금 수급자)

즉, 2000년 7월부터는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을 의무화하되 일시금의 50%에 대하여 연금과 일시금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향후 수급자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시금 및 연금수급자 총수에 대한 추이를 먼저 추정할 필요가 있다. 단, 총급여액 추계시에는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각각의 향후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6년~1999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이 분석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다. 단, 2000년과 2001년의 추정치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경제가동율 둔화 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에 의한 추세이탈에 대한 조정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전후 연도 평균을 이용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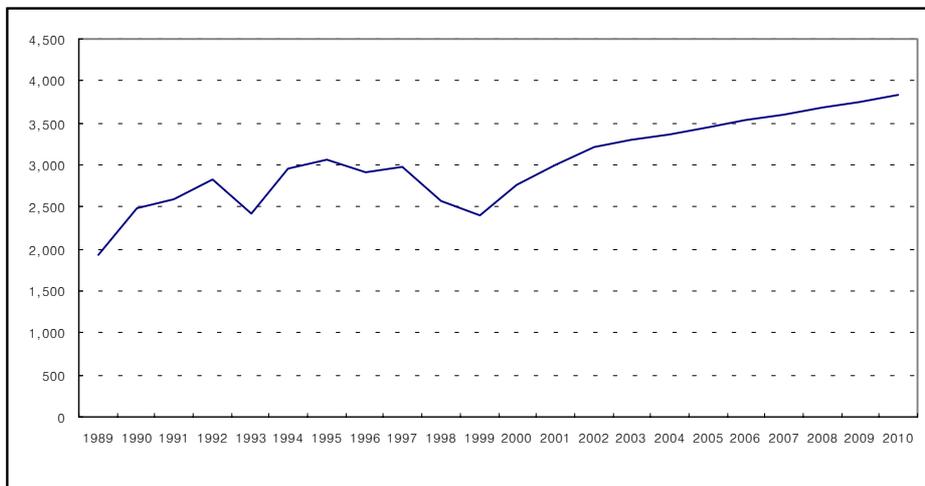
$$-150870.7 + 76.96786 \times \text{Year}$$

단, 2000년, 2001년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전후 연도의 평균치에 의해 조정하였다.

- 2000년 : (1999년+2001년) / 2
- 2001년 : (2000년+2002년) / 2

<그림-40> 유족급여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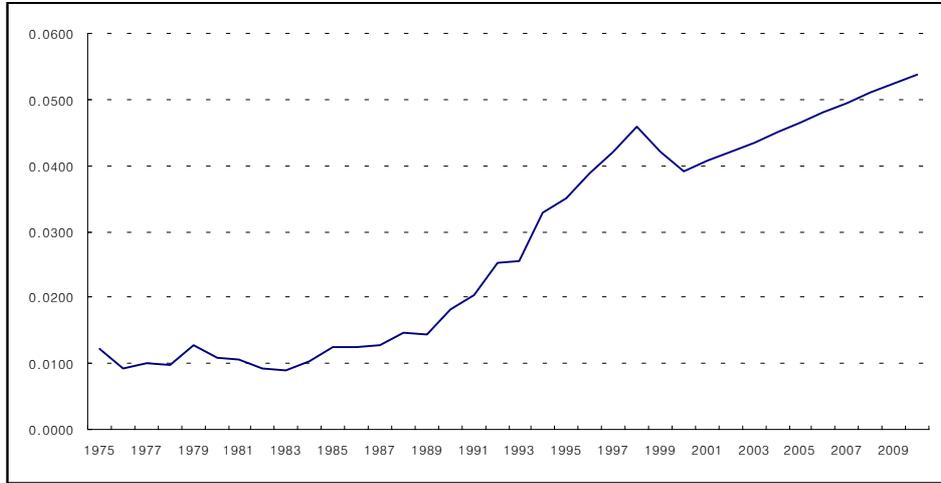
## 6. 장의비 수급자수

장의비에 대한 재해율비중 추계는 과거 1975년 - 1999년간의 재해율비중 자료를 사용하여 추이(trend)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식을 얻었다. (<그림-41> 참조)

$$-2.902840 + 0.001471 \times \text{Year}$$

<그림-41> 장의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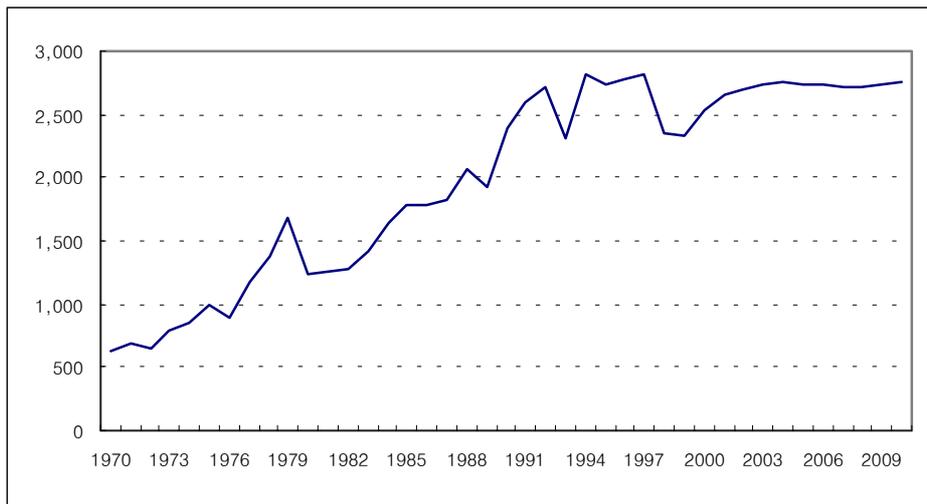
이에 따라 장의비 수급자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으며 <그림-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장의비 수급자수 :

총재해자수 추계치(i) × 장의비 재해율비중 추계치(i)

<그림-42> 장의비 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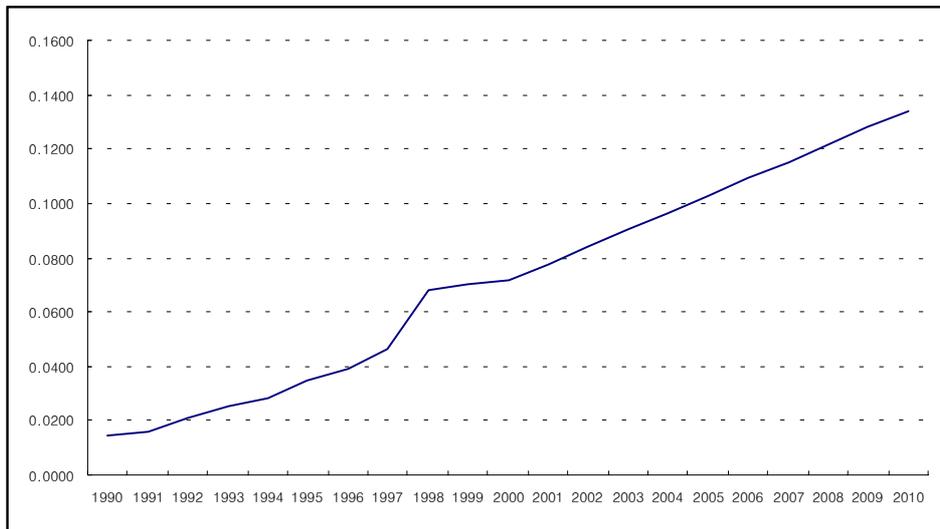
## 7.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의 재해율비중 추계는 과거 1990년~1999년간의 재해율비중 자료를 사용하여 추이(trend)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식을 얻었다. (<그림-43> 참조)

$$-12.474455 + 0.006273 \times \text{Year}$$

<그림-43> 상병보상연금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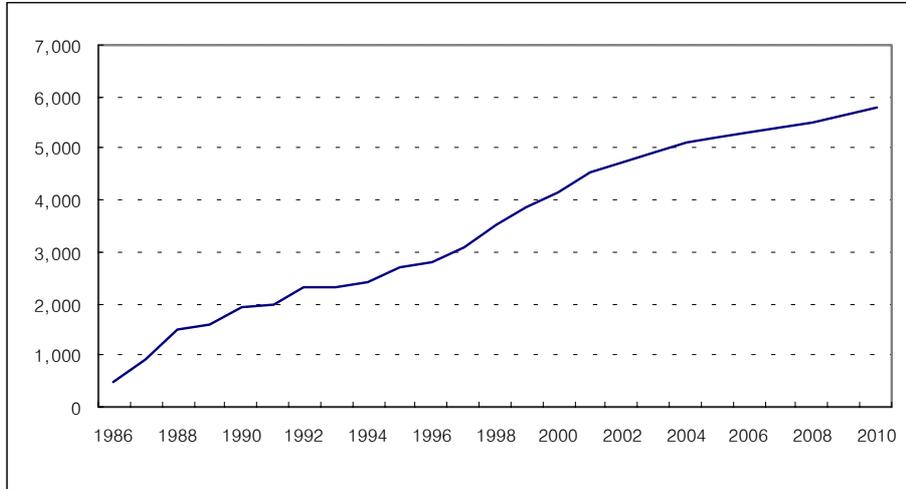
이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

총재해자수 추계치(i)×상병보상연금 재해율비중 추계치(i)

<그림-44>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단위 : 명)



#### 제 4 절 급여항목별 총급여액 증장기추계

여기서 1인당 급여액 및 총급여액에 대한 추계는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1995년 불변가격으로 조정된 실질1인당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급여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장의비, 상병보상연금등에 대해서는 식 (3)과 같이 「수급자수 × 1인당 급여액」으로 산출하며, 일부 연금항목은 각기 특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text{급여항목별 총급여액}(i) = \text{수급자수}(i) \times \text{1인당 급여액}(i) \quad \dots (3)$$

##### 1. 요양급여액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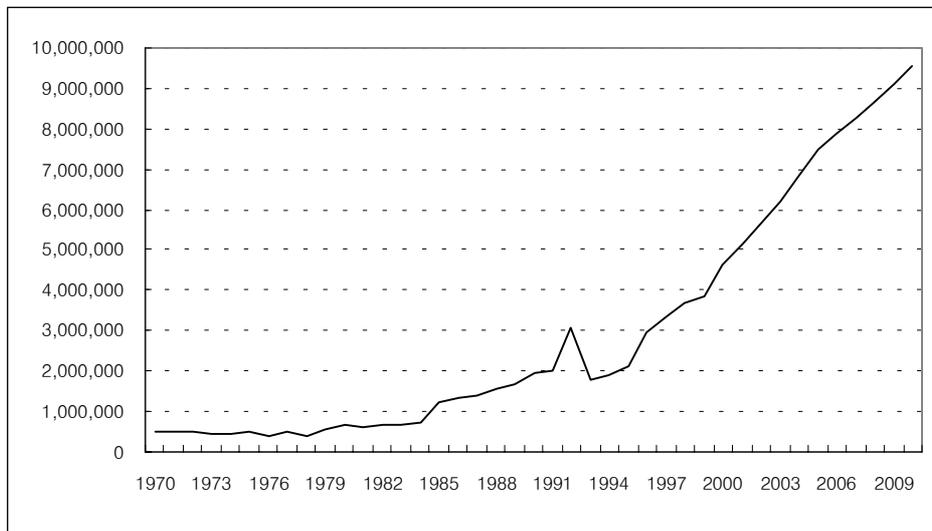
######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요양급여는 의료 및 진료비 등의 변동에 의존하며 그 동안 요양급여수준의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90년대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가 급작스런 변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나 향후 단계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하에 2000년에는 20%, 2001년-2005년까지 10%, 2006년-2010까지는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림-45> 1인당 요양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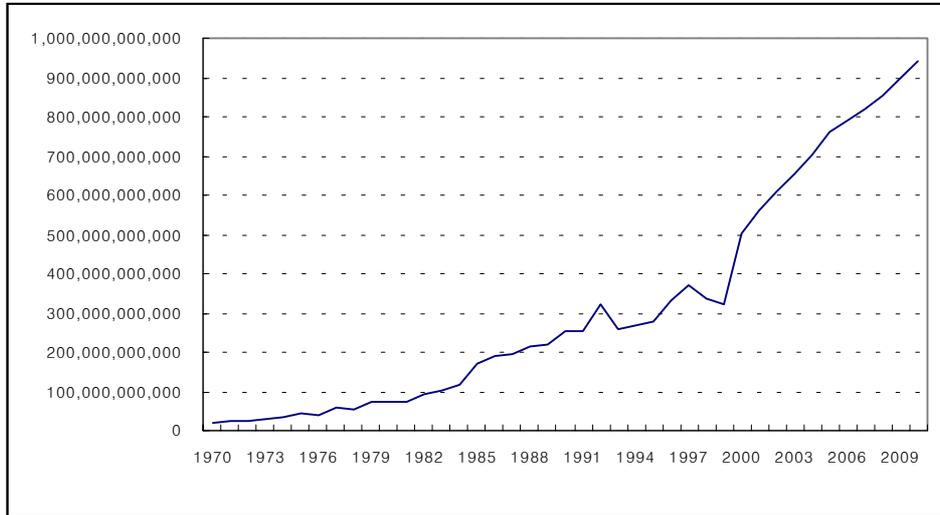


#### 나. 총급여액 추계

요양급여액은 식 (3)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수와 1인당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46>과 같다. GDP Deflator로 조정한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볼 때 2005년에 7,615억 8천만원, 2010년에는 9,396억 9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

<그림-46> 총요양급여액

(단위 : 원)



## 2. 휴업급여액 추계

###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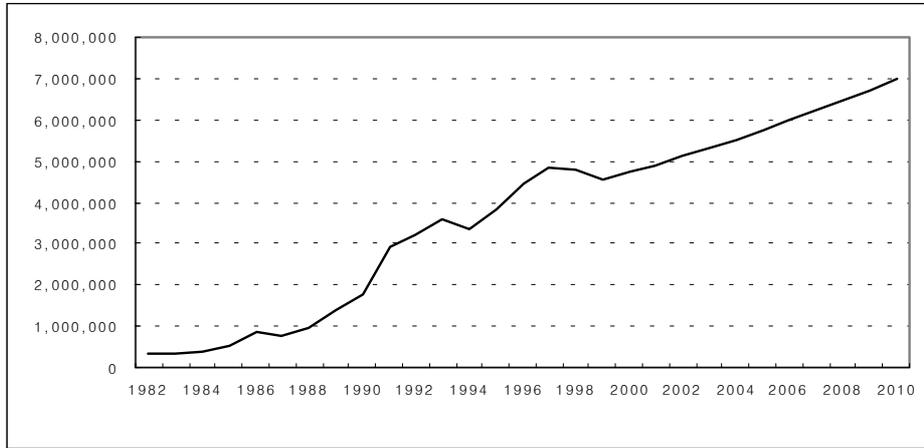
휴업급여는 재해자의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 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질 임금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와 취업자 증가율을 고려한 식 (4)에 의해 추정된 것이다.<sup>12)</sup>

$$\begin{array}{ccccccc}
 \text{실질임금증가율} & = & \text{실질GDP증가율} & - & \text{취업자증가율} & \dots\dots\dots & (4) \\
 (4\%) & & (5-6\%) & & (1-2\%) & & 
 \end{array}$$

12) 『한국경제중장기 전망』 참조.

<그림-47> 1인당 휴업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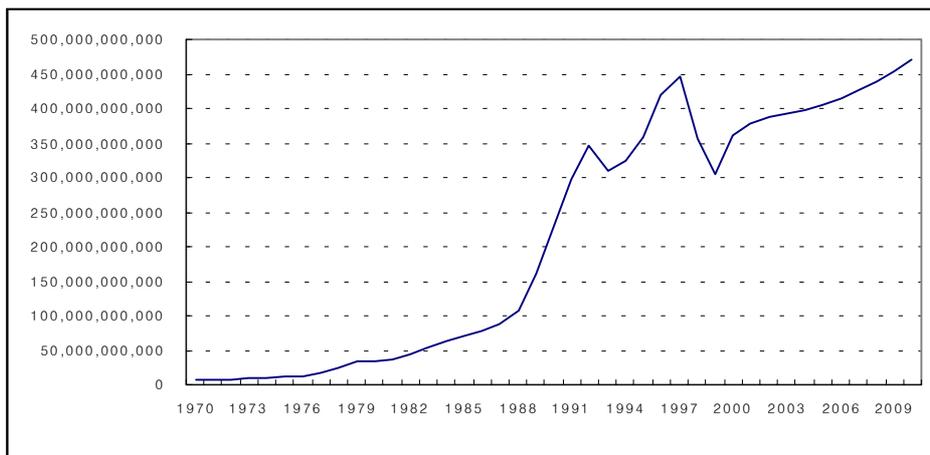


나. 총급여액 추계

휴업급여액도 식 (3)에 따라 「수급자수×1인당 급여액」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서서와 같이 1995년 불변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2005년에는 약 4,055억 3천만원, 2010년에는 4,716억 1천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48> 총휴업급여액

(단위 : 원)



### 3, 장해급여액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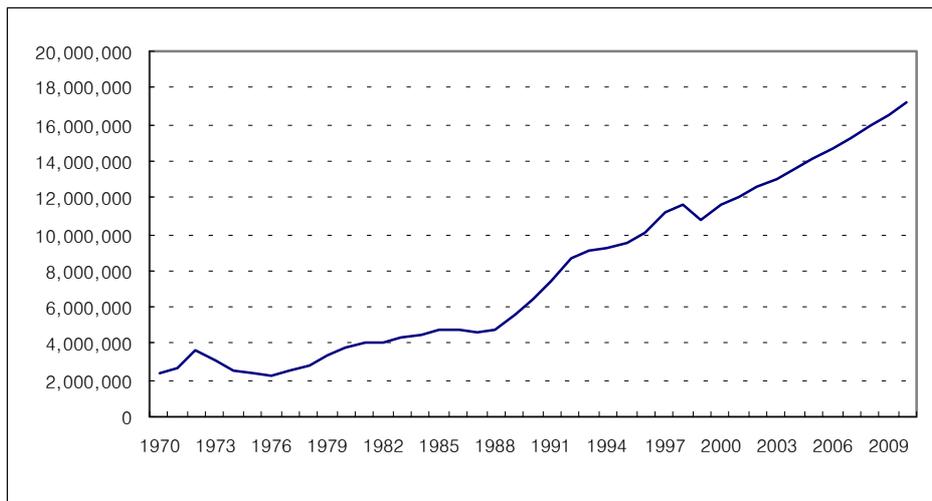
장해급여에 관해서는 2000년 7월 제도변경에 의해 장해급여를 의무화하되 4~7급은 장해일시금과 연금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4~7급 장해자중 향후 추가로 연금수급을 선택하는 자의 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계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향후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1인당 장해일시금 전망

장해일시금은 휴업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실질 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2000년도 추정치에 대해서는 1997년~1999년 3년간 평균 1인당 급여액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49> 1인당 장해일시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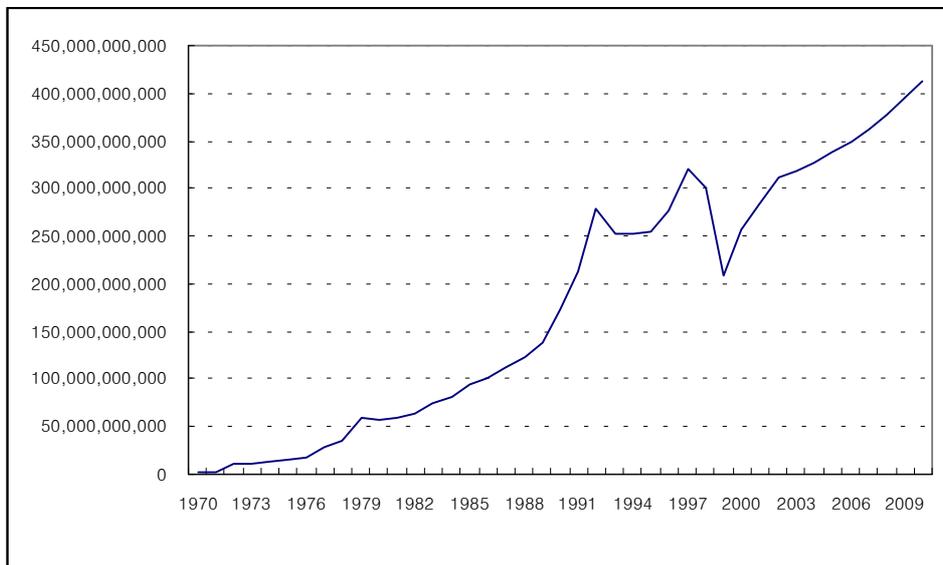


나. 장애일시금 추계

장애일시금도 식 (3)에 의해 추계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5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1995년 불변가격으로 추산하여 2005년에 약 3,375억 6천만원, 2010년에는 약 4,137억 4천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50> 총장애일시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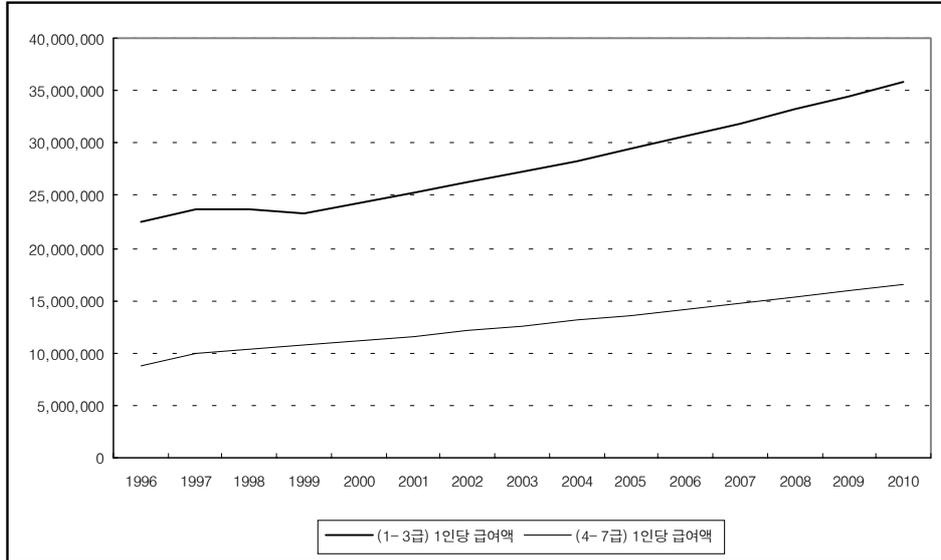


다. 1인당 장애연금 전망

장애연금은 1-3급과 4-7급으로 나누어 산출하기로 하는데, 양자 모두 실질 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51> 1인당 장해연금

(단위 : 원)



라. 장해연금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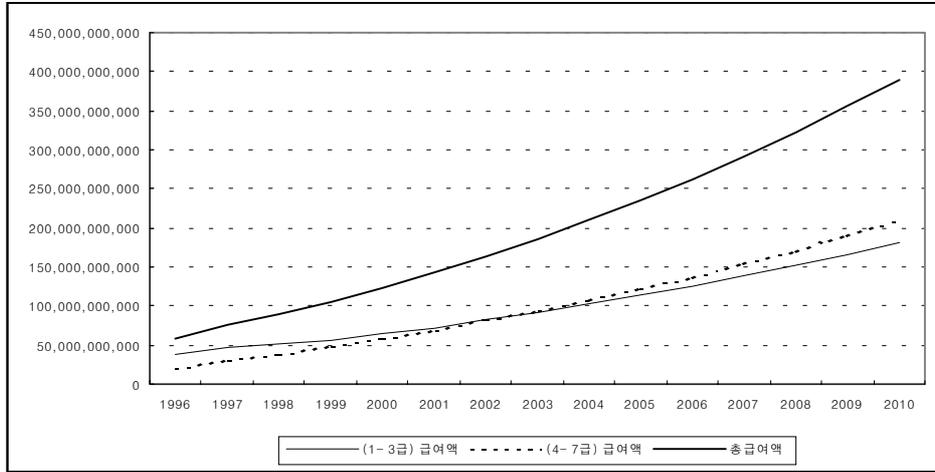
장해등급별 총급여액은 다음 식과 같이 추계하며 이를 통한 추계결과는 <그림-52>와 같다.

- (1-3급) 장해연금 = (1-3급) 수급자수 × (1-3급) 1인당 급여액
- (4-7급) 장해연금 = (4-7급) 수급자수 × (4-7급) 1인당 급여액

1995년 불변가격으로 추산하여 2005년에 약 2,355억 1천만원, 2010년에는 약 3,906억 2천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52> 총장해연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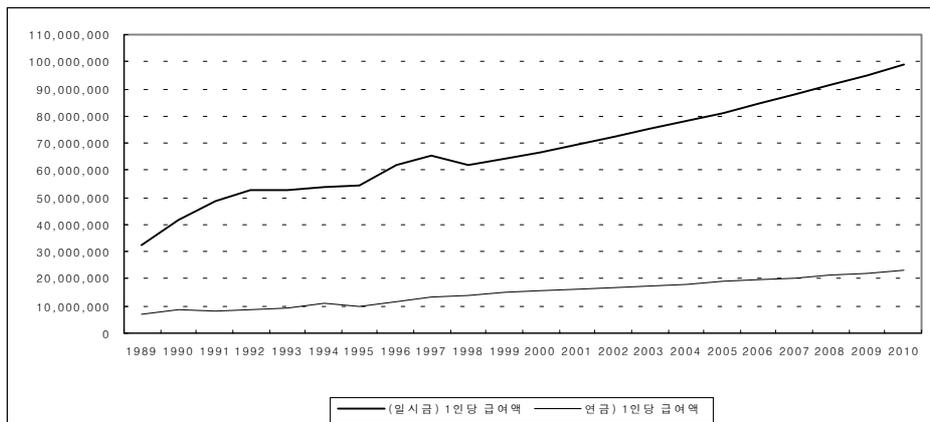
#### 4. 유족급여액 추계

#####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유족급여(일시금, 연금)는 주로 재해자의 임금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 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하기로 한다.

<그림-53> 1인당 유족급여액

(단위 : 원)



나. 총급여액 추계

유족급여의 50% 연금수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유족급여에 대한 연금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추계의 초점이 되었다.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연금수급자 수에 대한 전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향후 일시금과 연금 수급자 수의 비율을 8 : 2 로 가정하였으며 일시금 수급자(80%)의 수급액 중 50%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유족연금액을 다음의 일련의 식으로 추계하였다.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추계: (A+B+C)

일시금 (A)

$$\text{유족일시금(A)} = \text{총수급자수} \times 0.8 \times \text{1인당 유족일시금} \times 0.5$$

연금 (B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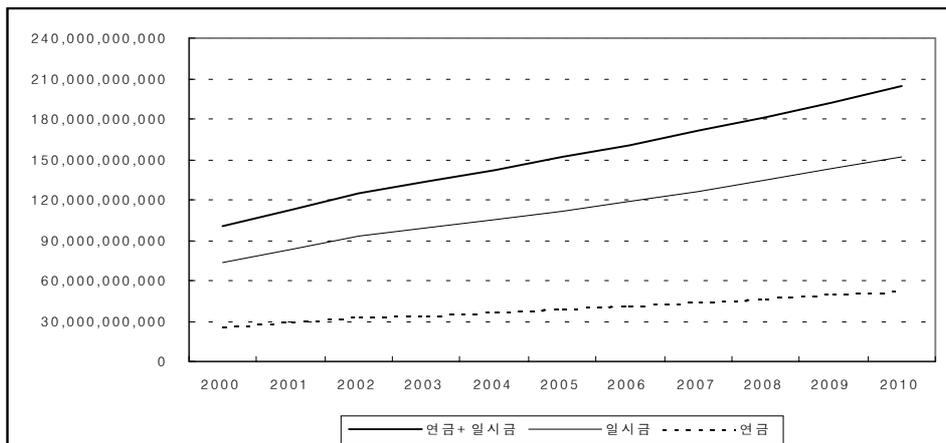
$$\text{유족연금(B)} = \text{총수급자수} \times 0.8 \times \text{1인당 유족연금} \times 0.5$$

$$\text{유족연금(C)} = \text{총수급자수} \times 0.2 \times \text{1인당 유족연금}$$

이에 따라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볼 때 2005년에 약 1,512억 8천만원, 2010년에는 약 2,045억 8천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54> 총유족급여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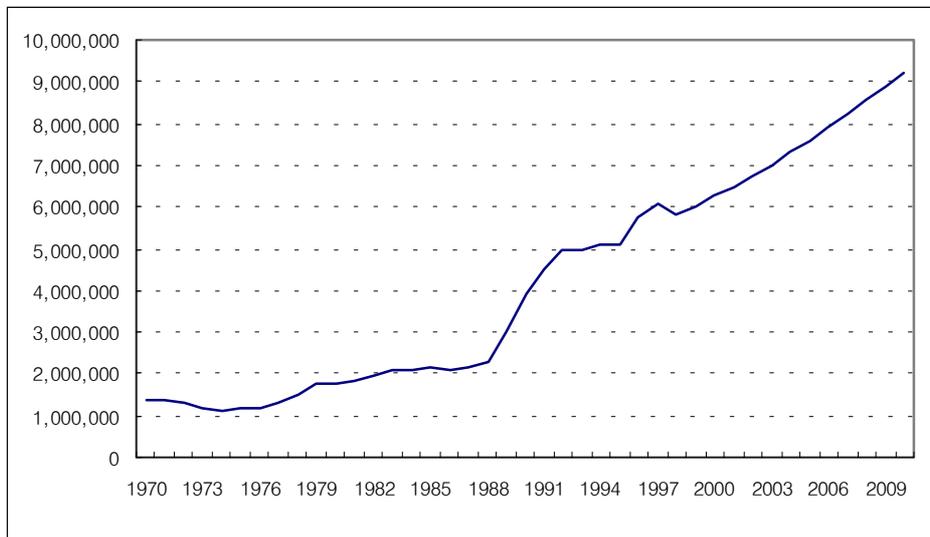
## 5. 장의비 추계

###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장의비 역시 재해자의 임금수준에 기초하여 지급되므로 실질 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림-55> 1인당 장의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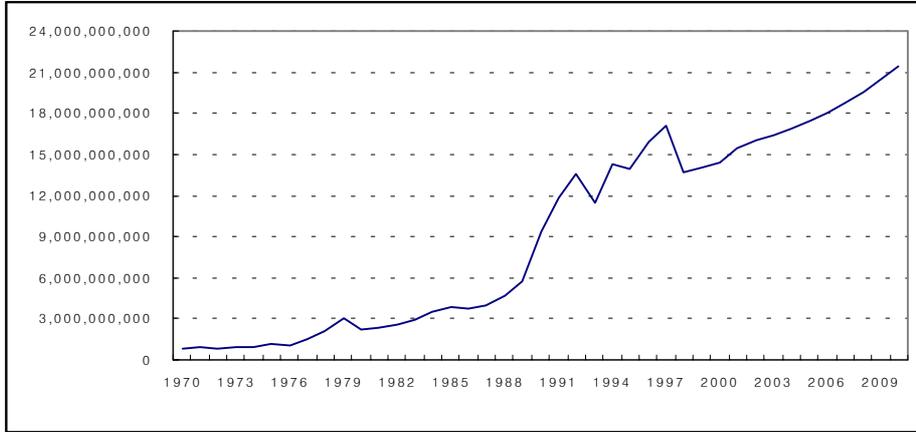


### 나. 총급여액 추계

장의비도 식 (3)에 의해 추산한 결과는 <그림-56>과 같으며 이에 따라 1995년 불변가격으로 하여 2005년에는 약 174억 3천만원, 2010년에는 약 214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56> 총장의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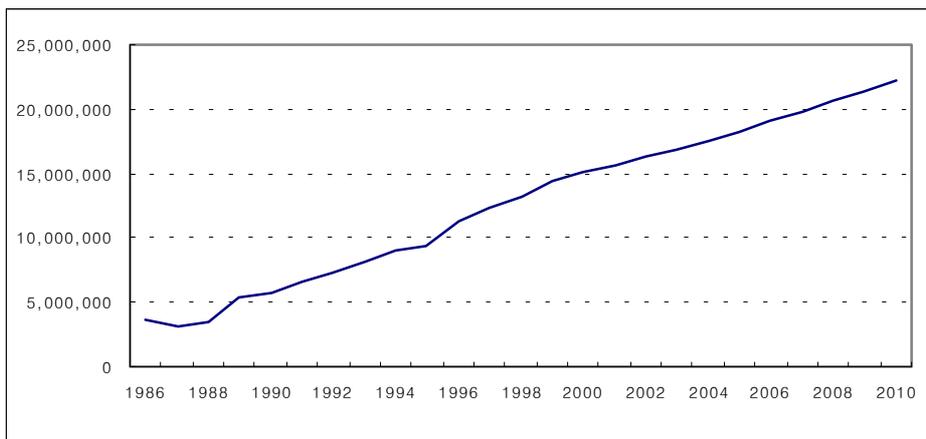
## 6. 상병보상연금 추계

### 가. 1인당 급여액 전망

상병보상연금 또한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보상금이므로 실질임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0년-2010년까지 매년 4%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림-57>과 같은 추세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57> 1인당 상병보상연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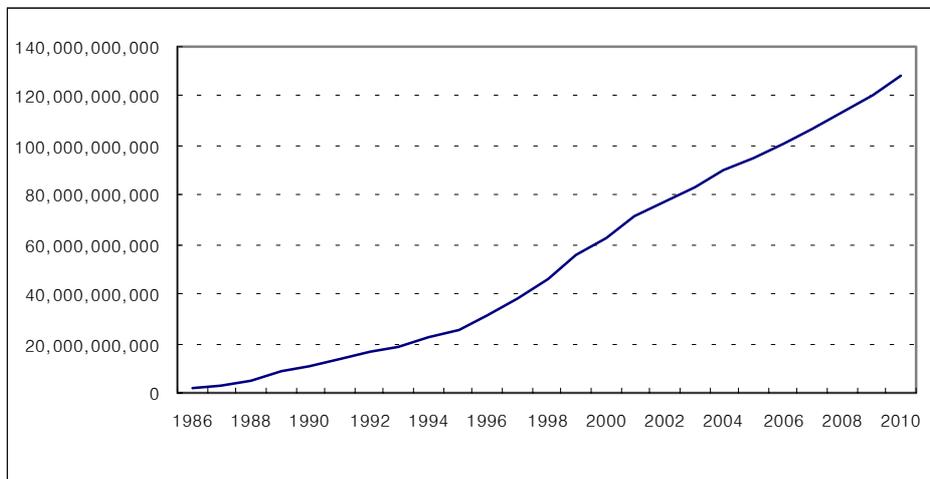


## 나. 총급여액 추계

상병보상연금액도 식 (3)에 의해 추계함으로써 <그림-58>과 같은 추세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병보상연금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5년에 약 929억 1천만원, 2010년에는 약 1,284억 8천만원 정도로 추계된다,

<그림-58> 총상병보상연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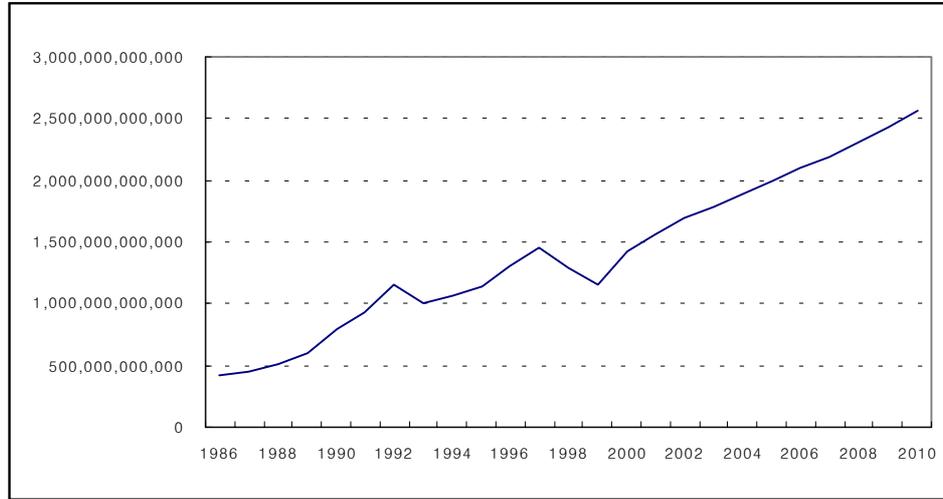
## 제 5 절 총급여액 증장기추계 및 향후전망

### 1. 총급여액 추계

이상에서 추계된 각 급여항목별 급여액을 합한 총급여액의 장기추계 결과를 보면 <그림-59>와 같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재 추세의 거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예상 급여액의 규모는 1995년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는 약 2조 18억원, 2010년에는 약 2조 5천7백억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59> 총급여액 추계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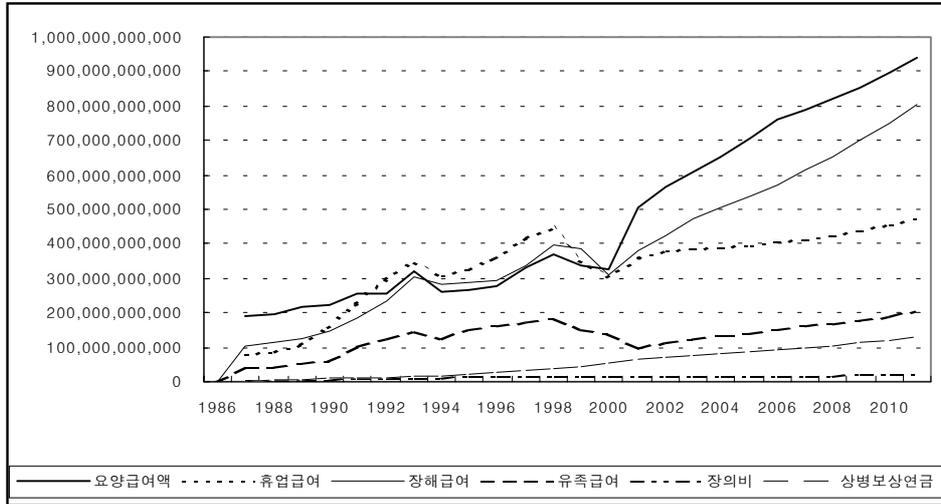
앞의 <그림-29>와 <표-15>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 급여별 연간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현재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이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사망자(재해자 중 발생 비율이 낮음)에 대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1990년까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의 순이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휴업급여 비중이 높아졌으며, 장해급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요양급여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외화위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부터 대체로 2002년까지는 회복된다는 가정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와 자연증가율에 의한 적용근로자수 증가의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장기적인 재해율의 하락을 고려하여 각 급여항목별 재해율 비중의 추세가 현재와 대체로 비슷하다면 급여 항목별로 <그림-60>과 같은 추세를 가질 것이다.

<그림-60> 항목별 총급여액 추이

(단위 : 원)



이러한 가정 하에서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장해급여항목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요양급여항목은 의료수가 및 의료비 등의 증가와 더불어 급여현실화가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 지속됨에 따라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 향후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연금포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제 가정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를 거쳐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족급여는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기회복과 더불어 건설산업이 회복되며 4인 이하 작업장에 대한 적용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총재해율은 장기적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나 유족급여 수급자수는 연금수급자의 누증 등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보상연금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로는 지금보다는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비의 경우 수급자수는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갈 것으로 보이나 1인당 급여액의 증가 추이에 따라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도변경에 따른 향후전망

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족급여에 대한 연금지급 의무화는 이미 앞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다. 유족연금 의무화는 당장 유족일시금의 절감효과는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연금지급으로 인한 더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고보상한도제의 도입은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연금),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등의 급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전체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지급액으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급여가 약간 증가하게 될 것이나 이것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의비 최고·최저한도제 실시에 따라 향후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현재 낮은 보상을 받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급여액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통상근로계수를 도입함으로써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의 지급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7월부터 간병급여 항목은 신설된 중증장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지급액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 5 장

### 산재보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 1. 중증 재해자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 가.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의 수급자수가 총재해자의 수에 비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현재 상병보상연급에 대한 수급자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중증 재해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총재해자수 중에서 장해일시금 수급자수가 차지하는 재해율 비중 추이를 보면(<그림-36> 참조) 1980년대 초반의 약 12~13%정도의 수준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1998년에는 약 50% 정도의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갑작스럽게 매우 급격히 감소하여 약 35%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건설 등 일반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는 산업의 회복세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총재해자수 자체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총재해자 중에 이러한 중증장애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이 기계화·자동화됨에 재해의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반면, 일단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결과를 요율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해소방안 마련

상해보상연금의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는 장기 요양자에 대한 인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해보상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판정 및 요양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누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반드시 요양 등이 필요한 산재환자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양판정, 요양기간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제거함으로써 요율의 추가적인 증가없이 산재환자에 대한 급여현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계획과 함께 단계별 시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고 산재환자의 신속한 재활 및 사회환원을 위하여 재활시스템 정비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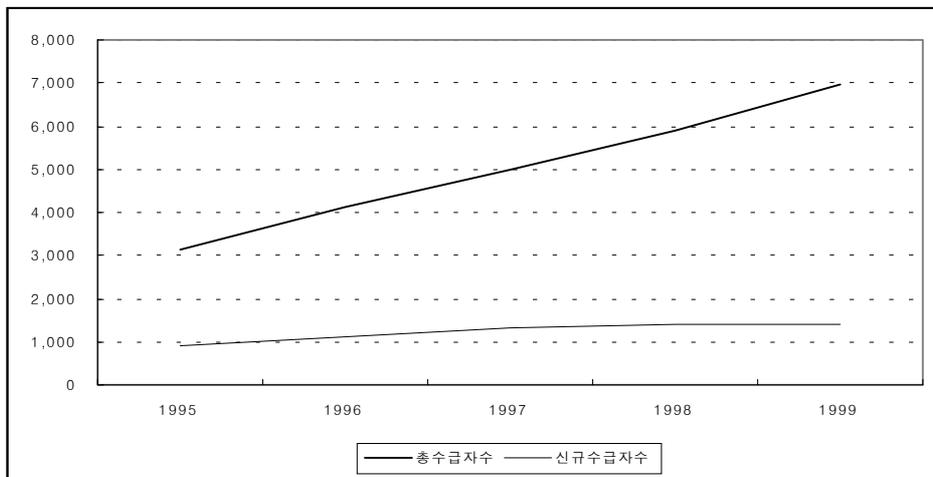
## 2. 연금지급 체계의 개선

### 가. 연금수급기간에 대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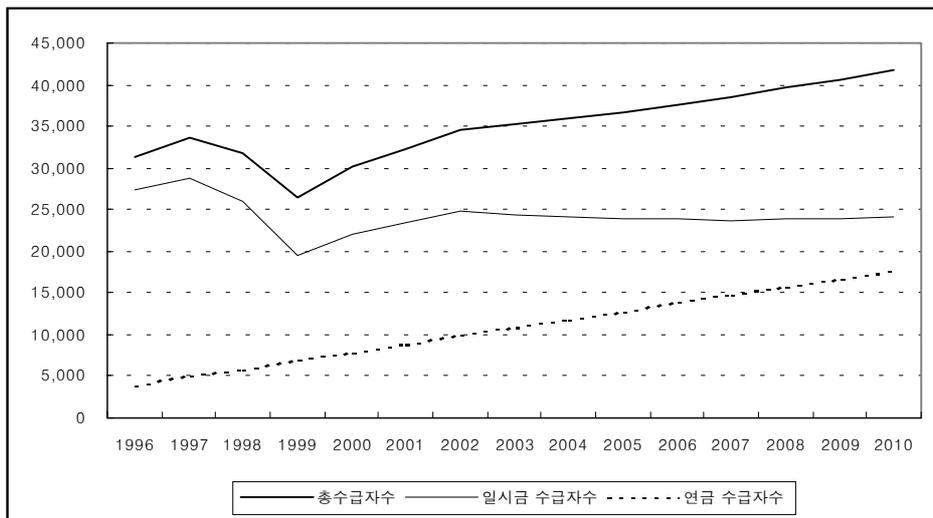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장애일시금 수급자수의 절대적인 수치는 부분적인 변동은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상당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 및 총수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61> 참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향후에도 연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62> 참조)

<그림-61>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및 총수급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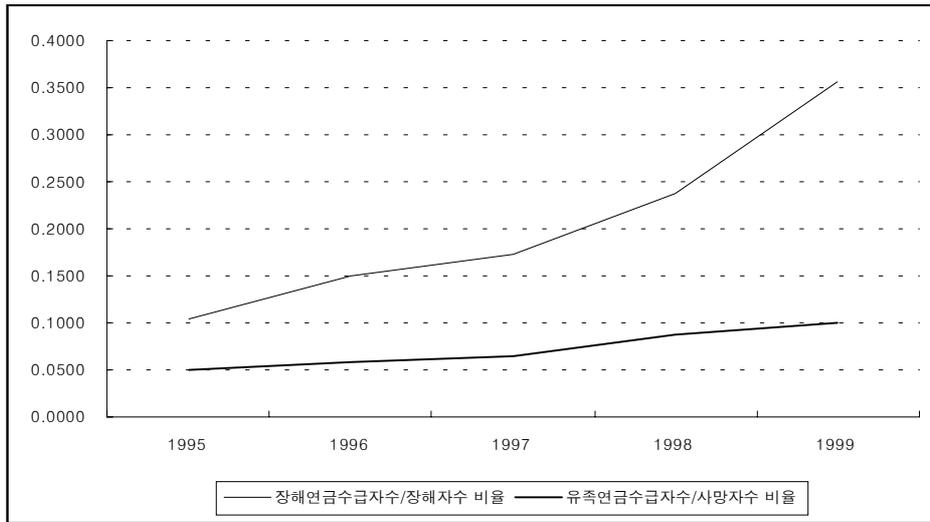
<그림-62> 장애급여 수급자수 (일시금, 연금) (단위 : 명)



이러한 연금수급자수의 증가현상은 총장해자수에 대한 장해연금 수급자수의 비율 추이와 사망자수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수의 비율 추이에 관한 <그림-63>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63> 연금수급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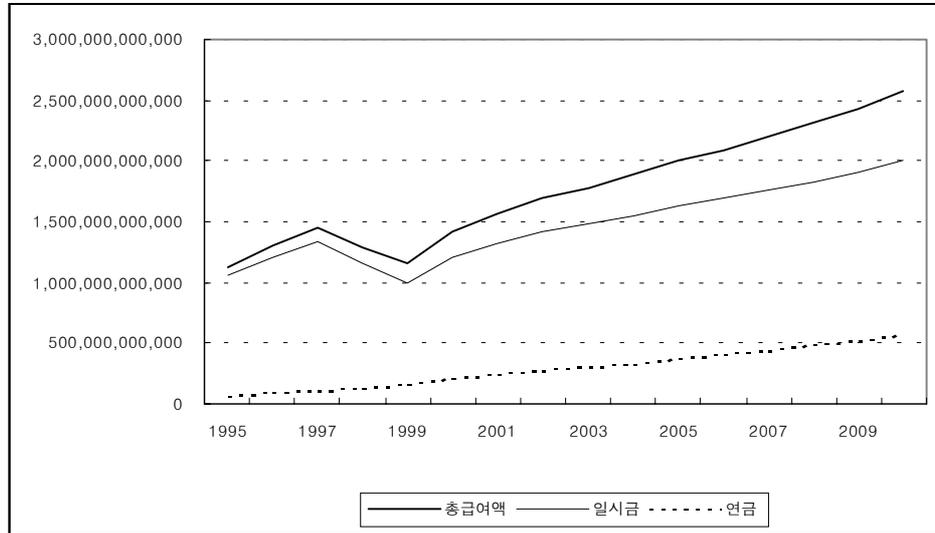


주) 장해연금수급자 비율 = 장해연금수급자수 / 장해자수  
 유족연금수급자 비율 = 유족연금수급자수 / 사망자수

한편, <그림-64>와 <표-10>에서 총급여액 중에서 일시금과 연금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시금의 비중에 비해 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1997년에 일시금 규모는 92.1%이었으나 1999년에는 86%로 감소한 반면에 연금의 경우 7.9%에서 14%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05년에는 일시금의 경우 81.6%, 연금의 경우 18.4%로, 2010년에는 일시금의 경우 77.7%, 연금의 경우 22.3%로 추계 되었다.

<그림-64> 총급여액 (연금, 일시금)

(단위 : 원)



<표-10> 연금 · 일시금 비교

(단위 : 원)

년 도	총 급여액	일시금	연금
1995	1,133,151,680,392	1,064,790,293,422	68,361,386,970
1996	1,304,463,107,709	1,212,955,470,568	91,507,637,141
1997	1,451,531,699,734	1,336,609,105,574	114,922,594,160
1998	1,288,690,903,123	1,153,091,453,247	135,599,449,876
1999	1,150,925,683,475	990,351,799,269	160,573,884,206
2000	1,422,233,166,567	1,209,490,338,426	212,742,828,141
2001	1,566,247,573,724	1,323,089,303,477	243,158,270,247
2002	1,691,572,592,154	1,418,152,589,312	273,420,002,842
2003	1,782,856,090,487	1,480,026,749,738	302,829,340,749
2004	1,885,958,245,824	1,551,755,197,901	334,203,047,923
2005	2,001,837,285,648	1,634,149,346,783	367,687,938,866
2006	2,094,135,854,992	1,690,694,626,030	403,441,228,962
2007	2,196,913,210,845	1,755,289,168,683	441,624,042,162
2008	2,310,360,088,872	1,827,979,894,551	482,380,194,321
2009	2,434,657,914,104	1,908,803,895,966	525,854,018,138
2010	2,570,169,622,965	1,997,966,259,312	572,203,363,653

이러한 연금급여규모의 증가추세는 산재보험의 연금지급체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먼저, 산재보험의 연금지급기간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종신적(life-time)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장해급여의 경우 일시금수급과 연금수급간에 수급금액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이는 연금수급을 의무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sup>13)</sup>

산재보험의 재정부담문제는 요율징수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재정부담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합리적인 요율체계의 수립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에 대한 요율부담의 완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장해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기간에 있어서 상한선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의 재정 및 요율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산재보험에 의한 연금지급이 여타 사회보험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재 재해자의 중복수급 가능성의 문제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과 동시에 요율상승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산재 발생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연금급여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왔으며 급여지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지급을 우선하여 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100%로 하고 국민연금을 50%로 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지급체계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 연금수급권자의 연령이 공적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

13) 외국의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한 노후생활 보장기능이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보상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역할은 오히려 산재피해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의 납입금을 대납해 줌으로써 일정 노령연령시에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며, 이에 더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간병보조 등에 해당하는 일정연금을 추가해 주는 것일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산재 피해자에 대한 연금수급구조가 지속된다면 이는 연금에 대한 중복적인 수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산재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개연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제도간에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이 시급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금번 연구에서는 급여부분에 대한 재정추계만을 시도해 보았으나 향후에는 급여부분 뿐만 아니라 수입부분 및 자산운용수익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추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요율산정시에도 장래 지급액의 규모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수입 및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재보험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cash flow모형 및 VaR모형 등의 개념에 의한 재무위험분석 및 관리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금지급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 연금지급 규모가 커졌으므로 장래의 연금지급규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추계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장해자의 재해정도 및 재해연령에 따른 평균기대여명

(경험생명표), 유족(배우자, 자녀 등)들의 평균 연금 수령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생산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집적·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산재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산재보험의 재무적 안전성을 위한 위험관리 부분과 징수 및 급여와 관련된 보험수지적 차원에서의 위험관리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하에서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적절한 위험분산과 수익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보험 수지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산재수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제거, 합리적인 요율체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합리적인 요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적용대상과 가입대상간의 괴리가 매우 큼으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가입비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산재보험의 가입과 급여간의 인센티브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징수비용을 낮추면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요율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합당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정을 기초로 한 제사업의 타당성 및 비용-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여러 가지 산재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 6 장 결 론

산재보험의 장기재정추계는 현재의 대폭적인 제도변경의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폭적인 제도변경에 따른 향후 필요급여액에 대해 개략적인 수준을 조망해 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연금수급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연금수급액에 대한 규모와 이에 대한 재정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해 일단 장기적으로 향후 연금급여액 규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현재의 경험적인 자료가 너무나 미비되어 있어 비교적 정교한 예측과 이에 따른 추계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본 연구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정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인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모형에 대한 여러번에 걸친 조정(calibration)이 이루어졌다.

향후 더 정교한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험자료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연금급여에 대한 추계모형을 재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금급여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해자의 장해정도에 따른 기대여명 등에 관한 연구도 더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부분의 지급을 위한 재정적립방식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의 연구에서는 수입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부분에 관해서만 추계하였는데 향후 수입부분을 포함한 재정추계가 필요할 것이며 산재보험 요율산출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좀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재정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번의 추계과정에서는 장래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stochastic한 상황에서 재정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_\_\_\_\_,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안)- 2000년~2004년」, 2000.

서경석 편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문사, 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개선방안」, 1999. 12.

\_\_\_\_\_,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경쟁의 합리화방안 연구」, 1999. 12.

\_\_\_\_\_, 「4인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운용확대 방안」, 1999. 12.

\_\_\_\_\_, 「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 전망」, 1999. 12.

### 2. 국외문헌

Texas Workers' Compensation Combined Industry Data Unlimited,  
Undeveloped Losses, Policy Year 1993 (Fifth Report)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Coverage, and Costs, 1996. (New  
Estimates),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March, 1999.

Quarterly Legislative Report of Market Conditions, Texas Department of  
Insurance, 4th Quarter, 1999.

## 부 록

<표-11> 요양급여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증가율
1964	1,489	-	6,897	-	10,261,910	-
1965	9,471	535.97	12,091	75.46	114,511,124	111.67
1966	13,096	38.28	18,508	53.07	242,382,340	27.61
1967	18,208	39.03	16,987	-8.22	309,295,643	46.24
1968	22,950	26.05	19,708	16.02	452,300,957	47.16
1969	31,706	38.15	20,993	6.52	665,614,195	34.78
1970	37,753	19.07	23,762	13.19	897,089,880	43.69
1971	44,546	17.99	28,937	21.78	1,289,037,095	20.63
1972	46,604	4.62	33,364	15.30	1,554,903,324	32.00
1973	59,368	27.39	34,572	3.62	2,052,474,931	56.33
1974	70,143	18.15	45,744	32.32	3,208,621,706	62.00
1975	80,570	14.87	64,566	41.15	5,202,094,634	13.00
1976	95,288	18.27	63,718	-1.31	6,071,583,347	16.71
1977	116,838	22.61	86,222	35.32	10,073,971,483	5.92
1978	137,844	17.98	83,327	-3.36	11,486,153,871	14.02
1979	129,148	-6.31	153,056	83.68	19,766,948,096	72.09
1980	112,102	-13.20	213,880	39.74	23,976,324,307	21.30
1981	116,643	4.05	244,374	14.26	28,504,497,981	18.89
1982	136,586	17.10	287,759	17.75	39,303,812,927	37.89
1983	156,581	14.64	293,053	1.84	45,886,619,811	16.75
1984	157,639	0.68	348,725	19.00	54,972,604,743	19.80
1985	140,091	-11.13	587,921	68.59	82,362,445,220	49.82
1986	140,428	0.24	695,188	18.25	97,623,917,040	18.53
1987	140,835	0.29	747,225	7.49	105,235,412,680	7.80
1988	140,404	-0.31	892,742	19.47	125,344,522,170	19.11
1989	132,403	-5.70	1,022,400	14.52	135,368,888,980	8.00
1990	130,657	-1.32	1,328,893	29.98	173,629,148,950	28.26
1991	125,870	-3.66	1,527,280	14.93	192,238,772,980	10.72
1992	105,006	-16.58	2,475,999	62.12	259,994,763,730	35.25
1993	144,984	38.07	1,545,144	-37.60	224,021,148,110	-13.84
1994	139,681	-3.66	1,783,963	15.46	249,185,674,750	11.23
1995	132,863	-4.88	2,103,054	17.89	279,418,012,180	12.13
1996	111,515	-16.07	3,075,590	46.24	342,974,380,020	22.75
1997	110,533	-0.88	3,589,295	16.70	396,735,529,740	15.67
1998	91,372	-17.34	4,155,188	15.77	379,667,868,090	-4.30
1999	83,470	-8.65	4,297,279	3.42	358,693,869,610	-5.52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12> 휴업급여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증가율
1964	-	-	-	-	5,184,996	-
1965	-	-	-	-	39,513,306	662.07
1966	-	-	-	-	89,090,459	125.47
1967	-	-	-	-	125,247,498	40.58
1968	-	-	-	-	172,344,376	37.60
1969	-	-	-	-	253,658,496	47.18
1970	-	-	-	-	344,288,184	35.73
1971	-	-	-	-	447,262,591	29.91
1972	-	-	-	-	537,644,262	20.21
1973	-	-	-	-	659,654,354	22.69
1974	-	-	-	-	904,958,666	37.19
1975	-	-	-	-	1,480,053,303	63.55
1976	-	-	-	-	1,970,664,439	33.15
1977	-	-	-	-	3,203,258,669	62.55
1978	-	-	-	-	5,442,044,271	69.89
1979	-	-	-	-	9,116,230,914	67.51
1980	-	-	-	-	11,043,836,392	21.14
1981	-	-	-	-	13,796,225,364	24.92
1982	136,586	-	135,110	-	18,454,076,924	33.76
1983	155,520	13.86	151,592	12.20	23,575,556,294	27.75
1984	157,639	1.36	185,637	22.46	29,263,664,922	24.13
1985	140,092	-11.13	245,754	32.38	34,428,055,490	17.65
1986	94,105	-32.83	428,226	74.25	40,298,225,540	17.05
1987	116,172	23.45	405,620	-5.28	47,121,646,090	16.93
1988	114,154	-1.74	546,594	34.76	62,395,766,230	32.41
1989	113,340	-0.71	864,984	58.25	98,037,280,220	57.12
1990	128,299	13.20	1,216,109	40.59	156,025,610,540	59.15
1991	102,013	-20.49	2,193,119	80.34	223,727,039,680	43.39
1992	107,724	5.60	2,609,005	18.96	281,052,584,550	25.62
1993	85,740	-20.41	3,134,306	20.13	268,736,548,950	-4.38
1994	96,862	12.97	3,134,309	0.00	303,595,435,749	12.97
1995	93,295	-3.68	3,837,092	22.42	357,981,516,570	17.91
1996	94,229	1.00	4,624,149	20.51	435,728,944,010	21.72
1997	92,320	-2.03	5,184,625	12.12	478,644,576,740	9.85
1998	73,769	-20.09	5,420,721	4.55	399,881,199,450	-16.46
1999	67,078	-9.07	5,029,837	-7.21	337,391,379,040	-15.63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표-13> 장애급여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 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일시금)	증가율	총 급여액 (연금)	증가율
1964	-	-	-	-	447,374	-	-	-
1965	155	-	45,559	-	7,061,648	1478.4	-	-
1966	295	90.32	95,680	110.01	28,225,677	299.70	-	-
1967	504	70.85	72,258	-24.48	36,418,228	29.03	-	-
1968	727	44.25	78,074	8.05	56,759,882	55.86	-	-
1969	918	26.27	96,747	23.92	88,813,572	56.47	-	-
1970	1,198	30.50	117,231	21.17	140,442,330	58.13	-	-
1971	1,146	-4.34	149,452	27.49	171,271,880	21.95	-	-
1972	2,993	161.17	231,967	55.21	694,276,222	305.36	58,436	-
1973	3,367	12.48	229,978	-0.86	774,230,455	11.52	330,386	465.38
1974	5,025	49.26	252,541	9.81	1,269,018,133	63.91	660,772	100.00
1975	6,490	29.15	302,103	19.63	1,960,650,262	54.50	1,051,416	59.12
1976	7,804	20.25	350,915	16.16	2,738,539,620	39.68	1,512,324	43.84
1977	11,336	45.26	440,526	25.54	4,993,805,818	82.35	2,432,653	60.86
1978	13,013	14.79	612,063	38.94	7,964,772,043	59.49	3,335,895	37.13
1979	17,245	32.52	896,721	46.51	15,463,953,845	94.15	4,492,993	34.69
1980	14,868	-13.78	1,252,555	39.68	18,623,358,904	20.43	5,895,414	31.21
1981	14,801	-0.45	1,545,078	23.35	22,869,232,529	22.80	7,192,216	22.00
1982	15,846	7.06	1,687,315	9.21	26,737,789,749	16.92	61,835,014	759.75
1983	16,823	6.16	1,931,734	14.49	32,497,273,382	21.54	87,220,168	41.05
1984	18,068	7.40	2,102,695	8.85	37,991,931,805	16.91	195,113,113	123.70
1985	19,539	8.14	2,331,307	10.87	45,551,416,440	19.90	318,471,320	63.22
1986	21,476	9.91	2,417,364	3.69	51,915,300,810	13.97	466,832,840	46.59
1987	24,584	14.47	2,475,884	2.42	60,867,139,900	17.24	627,223,520	34.36
1988	25,953	5.57	2,761,177	11.52	71,660,837,970	17.73	974,220,790	55.32
1989	24,948	-3.87	3,414,442	23.66	85,183,500,040	18.87	4,209,235,690	332.06
1990	26,900	7.82	4,362,846	27.78	117,360,544,460	37.77	8,957,871,790	112.81
1991	28,710	6.73	5,570,724	27.69	159,935,474,260	36.28	13,990,150,600	56.18
1992	32,004	11.47	7,033,577	26.26	225,102,590,090	40.75	22,305,578,470	59.44
1993	28,013	-12.47	7,835,280	11.40	219,489,697,900	-2.49	26,837,526,270	20.32
1994	27,453	-2.00	8,601,002	9.77	236,123,311,261	7.58	32,024,530,650	19.33
1995	26,651	-2.92	9,537,475	10.89	254,183,235,280	7.65	41,496,811,070	29.58
1996	27,291	2.40	10,528,790	10.39	287,341,212,880	13.04	60,410,112,760	45.58
1997	28,745	5.33	11,933,505	13.34	343,028,598,190	19.38	79,441,014,910	31.50
1998	25,889	-9.94	13,045,440	9.32	337,733,388,360	-1.54	97,899,339,360	23.24
1999	19,428	-24.96	11,931,020	-8.54	231,795,854,210	-31.37	111,997,334,950	14.40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14> 유족급여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일시금)	증가율	총 급여액 (연 금)	증가율
1964	-	-	-	-	8,546,450	-	-	-
1965	144	-	265,023	-	38,163,280	346.54	-	-
1966	295	104.86	288,846	8.99	85,209,574	123.28	-	-
1967	319	8.14	317,923	10.07	101,417,293	19.02	-	-
1968	370	15.99	386,529	21.58	143,015,707	41.02	-	-
1969	524	41.62	519,230	34.33	272,076,771	90.24	-	-
1970	639	21.95	657,744	26.68	420,298,175	54.48	-	-
1971	693	8.45	823,818	25.25	570,905,823	35.83	-	-
1972	658	-5.05	933,845	13.36	614,469,821	7.63	-	-
1973	835	26.90	961,264	2.94	802,655,683	30.63	-	-
1974	845	1.20	1,223,037	27.23	1,033,466,328	28.76	-	-
1975	1,006	19.05	1,580,619	29.24	1,590,102,839	53.86	-	-
1976	887	-11.83	1,942,697	22.91	1,723,172,325	8.37	-	-
1977	1,175	32.51	2,606,582	34.17	3,063,649,342	77.79	-	-
1978	1,395	18.69	3,614,161	38.66	5,041,755,085	64.57	-	-
1979	1,702	22.01	5,178,544	43.28	8,813,882,449	74.82	-	-
1980	1,260	-25.97	6,433,215	24.23	8,105,851,190	-8.03	-	-
1981	1,264	0.32	8,021,139	24.68	10,138,719,291	25.08	-	-
1982	1,279	1.19	9,014,046	12.38	11,528,965,424	13.71	-	-
1983	1,419	10.95	10,019,559	11.15	14,217,753,590	23.32	-	-
1984	1,631	14.92	10,779,489	7.58	17,578,085,049	23.63	5,227,970	-
1985	1,778	9.03	11,654,172	8.11	20,721,118,450	17.88	20,327,630	288.82
1986	1,835	3.23	11,654,778	0.01	21,392,195,630	3.24	40,125,040	97.39
1987	1,831	-0.24	12,875,809	10.48	23,575,606,960	10.21	115,653,480	188.23
1988	2,082	13.71	14,750,274	14.56	30,710,071,010	30.26	127,174,220	9.96
1989	1,891	9.17	19,841,320	34.51	37,519,936,720	22.17	176,679,490	38.93
1990	2,442	29.14	28,349,035	42.88	69,228,343,000	84.51	282,456,460	59.87
1991	2,534	3.77	36,442,439	28.55	92,345,140,720	33.39	367,463,300	30.10
1992	2,762	9.00	42,745,867	17.30	118,064,083,490	27.85	467,459,480	27.21
1993	2,332	-15.57	45,618,621	6.72	106,382,623,330	-9.89	670,012,000	43.33
1994	2,851	22.26	50,041,447	9.70	142,668,164,487	34.11	1,100,082,210	64.19
1995	2,925	2.60	54,564,723	9.04	159,604,738,910	11.87	1,307,529,160	18.86
1996	2,763	-5.54	64,284,444	17.81	177,617,917,890	11.29	1,883,834,620	44.08
1997	2,803	1.45	69,948,144	8.81	196,064,647,670	10.39	2,573,781,410	36.62
1998	2,369	-15.48	69,949,143	0.00	165,709,520,340	-15.48	2,992,051,400	16.25
1999	2,165	-8.61	71,088,108	1.63	153,905,753,660	-7.12	3,836,178,980	28.21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15> 장의비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증가율
1964	33	-	23,308	-	769,158	-
1965	146	342.43	24,215	3.89	3,535,410	359.65
1966	291	99.09	27,018	11.58	7,853,455	122.14
1967	320	10.09	29,896	10.65	9,566,823	21.82
1968	364	13.75	37,241	24.57	13,555,687	41.69
1969	520	42.86	50,730	36.22	26,379,647	94.60
1970	633	21.73	65,531	29.18	41,481,144	57.25
1971	692	9.32	75,790	15.66	52,446,592	26.43
1972	650	-6.07	85,214	12.43	55,388,822	5.61
1973	798	22.77	90,113	5.75	71,909,969	29.83
1974	844	5.71	110,998	23.18	93,632,533	30.21
1975	1,001	18.64	143,253	29.06	143,369,607	53.12
1976	897	-10.37	184,357	28.69	165,367,844	15.34
1977	1,175	30.99	236,207	28.12	277,542,550	67.83
1978	1,375	17.02	332,770	40.88	457,558,792	64.86
1979	1,678	22.04	469,830	41.19	788,374,503	72.30
1980	1,244	-25.86	583,369	24.17	725,710,697	-7.95
1981	1,258	1.13	706,245	21.06	888,456,248	22.43
1982	1,277	1.51	818,633	15.91	1,045,393,979	17.66
1983	1,411	10.49	910,226	11.19	1,284,329,544	22.86
1984	1,640	16.23	981,508	7.83	1,609,673,002	25.33
1985	1,774	8.17	1,055,786	7.57	1,872,965,110	16.36
1986	1,788	0.79	1,079,089	2.21	1,929,410,710	3.01
1987	1,830	2.35	1,171,032	8.52	2,142,989,210	11.07
1988	2,075	13.39	1,324,669	13.12	2,748,689,080	28.26
1989	1,918	-7.57	1,847,484	39.47	3,543,474,650	28.92
1990	2,402	25.23	2,652,632	43.58	6,371,621,370	79.81
1991	2,594	7.99	3,414,646	28.73	8,857,592,830	39.02
1992	2,720	4.86	4,030,165	18.03	10,962,049,690	23.76
1993	2,302	-15.37	4,318,540	7.16	9,941,278,120	-9.31
1994	2,812	22.15	4,731,402	9.56	13,304,701,624	33.83
1995	2,740	-2.56	5,102,660	7.85	13,981,288,780	5.09
1996	2,769	1.06	5,994,309	17.47	16,598,240,290	18.72
1997	2,808	4.41	6,542,591	9.15	18,371,594,340	10.68
1998	2,357	-16.06	6,529,075	-0.21	15,389,030,270	-16.23
1999	2,333	-1.00	6,652,739	1.89	15,552,928,550	0.87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16> 상해보상연금 현황

(단위: 명, 원, %)

년도	수급자수	증가율	1인당 급여액	증가율	총 급여액	증가율
1973	-	-	-	-	2,645,239	-
1974	-	-	-	-	6,521,068	146.52
1975	-	-	-	-	3,041,933	-53.35
1976	-	-	-	-	-	-
1977	-	-	-	-	4,110,034	-
1978	-	-	-	-	22,908,021	457.37
1979	-	-	-	-	22,801,627	-0.46
1980	-	-	-	-	23,545,930	3.26
1981	-	-	-	-	15,258,400	-35.20
1982	-	--	-	-	8,940,065	-41.41
1983	-	-	-	--	44,252,412	394.99
1984	-	-	-	-	560,276,208	1166.09
1985	-	-	-	-	702,251,910	25.34
1986	503	-	1,829,042	-	919,273,040	30.90
1987	932	85.35	1,684,768	-7.89	1,569,449,700	70.73
1988	1,509	61.99	2,010,195	19.32	3,033,384,890	93.28
1989	1,592	5.50	3,307,996	64.56	5,266,330,080	73.61
1990	1,954	22.74	3,836,168	15.97	7,495,783,440	42.34
1991	2,003	2.51	5,018,680	30.83	10,052,417,660	34.11
1992	2,294	14.53	5,935,074	18.26	13,615,059,360	35.44
1993	2,303	0.39	7,143,619	20.36	16,451,755,800	20.83
1994	2,431	5.56	8,457,764	18.40	20,560,824,110	24.98
1995	2,704	11.23	9,451,571	11.75	25,557,046,740	24.30
1996	2,783	2.92	11,779,550	24.63	32,782,487,610	28.27
1997	3,105	11.57	13,263,196	12.60	41,182,224,620	25.62
1998	3,501	12.75	14,793,942	11.54	51,793,589,800	25.77
1999	3,875	10.68	16,021,252	8.30	62,082,349,770	19.86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년도.

<표-17> 요양급여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83	158,760	667,547	105,979,713,622
1984	150,019	751,563	112,748,654,688
1985	164,105	1,212,208	198,929,434,443
1986	161,095	1,363,114	219,590,805,608
1987	186,412	1,386,317	258,426,171,985
1988	180,636	1,539,210	278,036,799,848
1989	174,280	1,667,863	290,675,158,238
1990	190,104	1,957,133	372,058,725,879
1991	183,743	2,030,957	373,174,214,149
1992	195,073	3,056,789	596,296,978,922
1993	144,384	1,782,173	257,317,267,931
1994	139,681	1,912,072	267,080,102,683
1995	132,683	2,103,054	279,039,513,882
1996	111,515	2,960,144	330,100,499,374
1997	110,533	3,348,223	370,089,127,085
1998	91,372	3,690,220	337,182,804,561
1999	83,470	3,878,411	323,730,936,940
2000	108,318	4,654,093	504,122,891,109
2001	109,900	5,119,502	562,635,160,823
2002	108,438	5,631,452	610,663,397,478
2003	105,657	6,194,597	654,504,696,167
2004	103,398	6,814,057	704,558,818,018
2005	101,606	7,495,463	761,583,149,070
2006	100,242	7,870,236	788,930,159,936
2007	99,271	8,263,748	820,353,644,067
2008	98,642	8,676,935	855,908,044,345
2009	98,306	9,110,782	895,643,730,018
2010	98,230	9,566,321	939,697,248,999

<표-18> 휴업급여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83	155,520	345,312	53,702,861,718
1984	157,639	400,080	63,068,243,366
1985	140,092	506,709	70,985,681,423
1986	94,105	839,659	79,016,128,510
1987	116,172	752,542	87,424,204,249
1988	114,154	942,403	107,578,907,293
1989	113,340	1,411,067	159,930,310,310
1990	128,299	1,791,029	229,787,349,838
1991	102,013	2,916,382	297,509,361,277
1992	107,724	3,220,994	346,978,499,444
1993	85,740	3,615,116	309,961,417,474
1994	96,862	3,359,388	325,397,037,244
1995	93,295	3,837,092	357,981,516,570
1996	94,229	4,450,577	419,373,382,108
1997	92,320	4,836,404	446,496,806,660
1998	73,769	4,814,139	355,134,280,151
1999	67,078	4,539,564	304,504,854,729
2000	76,326	4,721,147	360,348,238,373
2001	77,205	4,909,993	379,078,251,644
2002	75,956	5,106,392	387,863,098,421
2003	73,803	5,310,648	391,939,168,548
2004	72,032	5,523,074	397,835,702,370
2005	70,602	5,743,997	405,538,889,318
2006	69,484	5,973,757	415,079,186,165
2007	68,649	6,212,707	426,494,246,286
2008	68,059	6,461,215	439,742,867,997
2009	67,679	6,719,664	454,783,066,176
2010	67,485	6,988,450	471,617,372,112

<표-19> 장애 일시금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75	6,490	2,436,315	15,811,695,661
1976	7,804	2,293,562	17,898,951,765
1977	11,336	2,474,865	28,055,088,865
1978	13,013	2,769,516	36,039,692,502
1979	17,245	3,396,670	58,575,582,746
1980	14,868	3,807,158	56,605,954,116
1981	14,801	3,992,450	59,093,624,106
1982	15,846	4,065,819	64,428,409,034
1983	16,823	4,400,305	74,025,679,686
1984	18,068	4,531,670	81,879,163,373
1985	19,539	4,806,819	93,920,446,268
1986	21,476	4,739,929	101,794,707,471
1987	24,584	4,593,477	112,926,048,052
1988	25,953	4,760,650	123,553,168,914
1989	24,948	5,570,052	138,961,664,013
1990	26,900	6,425,399	172,843,217,172
1991	28,710	7,407,878	212,680,151,941
1992	32,004	8,683,428	277,904,432,210
1993	28,013	9,037,232	253,159,974,510
1994	27,453	9,218,652	253,079,647,654
1995	26,651	9,537,475	254,183,235,280
1996	27,291	10,133,580	276,555,546,564
1997	28,745	11,132,001	319,989,363,983
1998	25,889	11,585,648	299,940,842,238
1999	19,428	10,768,069	209,202,034,486
2000	22,110	11,608,382	256,661,330,081
2001	23,427	12,072,717	282,827,552,193
2002	24,743	12,555,626	310,667,376,635
2003	24,369	13,057,851	318,201,471,720
2004	24,090	13,580,165	327,150,082,572
2005	23,901	14,123,372	337,561,434,466
2006	23,796	14,688,307	349,515,931,846
2007	23,769	15,275,839	363,097,135,381
2008	23,813	15,886,873	378,318,326,018
2009	23,918	16,522,347	395,187,159,511
2010	24,078	17,183,241	413,745,813,549

<표-20> 장애 연금 추계

(단위 : 명, 원)

년도	1-3급 장애연금			4-7급 장애연금			합 계
	수급자 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수급자 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96	1,652	22,394,935	36,996,432,941	2,420	8,786,171	21,262,534,591	58,258,967,532
1997	1,960	23,623,563	46,302,183,109	3,052	9,995,488	30,506,230,412	76,808,413,522
1998	2,150	23,696,344	50,947,138,943	3,767	10,393,516	39,152,373,882	90,099,512,825
1999	2,393	23,286,904	55,725,562,067	4,636	10,734,660	49,765,884,681	105,491,446,747
2000	2,642	24,218,381	63,984,961,295	5,309	11,164,047	59,269,923,434	123,254,884,729
2001	2,883	25,187,116	72,622,010,772	6,045	11,610,608	70,189,611,388	142,811,622,160
2002	3,125	26,194,600	81,847,648,268	6,782	12,075,033	81,888,042,502	163,735,690,770
2003	3,366	27,242,384	91,695,141,547	7,518	12,558,034	94,410,044,726	186,105,186,273
2004	3,607	28,332,080	102,199,478,051	8,254	13,060,355	107,802,786,260	210,002,264,311
2005	3,849	29,465,363	113,397,449,249	8,991	13,582,770	122,115,891,045	235,513,340,294
2006	4,090	30,643,977	125,327,738,978	9,727	14,126,080	137,401,559,755	262,729,298,732
2007	4,331	31,869,737	138,031,015,966	10,463	14,691,124	153,714,696,536	291,745,712,502
2008	4,572	33,144,526	151,550,030,731	11,199	15,278,769	171,113,041,764	322,663,072,495
2009	4,814	34,470,307	165,929,717,052	11,936	15,889,919	189,657,311,095	355,587,028,147
2010	5,055	35,849,119	181,217,298,229	12,672	16,525,516	209,411,341,107	390,628,639,336

<표-21> 유족급여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일시금	연금	합 계
1989	1,934	61,207,074,584	288,221,028	61,495,295,612
1990	2,490	101,956,322,533	415,988,895	102,372,311,429
1991	2,596	122,799,389,255	488,648,005	123,288,037,261
1992	2,830	145,758,127,765	577,110,469	146,335,238,235
1993	2,414	122,701,987,693	772,793,541	123,474,781,234
1994	2,961	152,913,359,579	1,179,080,611	154,092,440,190
1995	3,060	159,604,738,910	1,307,529,160	160,912,268,070
1996	2,917	170,950,835,313	1,813,122,830	172,763,958,142
1997	2,981	182,896,126,558	2,400,915,494	185,297,042,052
1998	2,561	147,166,536,714	2,657,239,254	149,823,775,968
1999	2,396	138,904,109,801	3,462,255,397	142,366,365,199
2000	2,769	73,904,780,191	25,897,253,244	99,802,033,435
2001	2,994	83,105,929,161	29,121,462,617	112,227,391,778
2002	3,219	92,924,922,399	32,562,173,135	125,487,095,534
2003	3,296	98,952,706,508	34,674,391,737	133,627,098,245
2004	3,373	105,314,033,469	36,903,488,351	142,217,521,820
2005	3,450	112,025,942,256	39,255,433,668	151,281,375,924
2006	3,527	119,106,301,293	41,736,489,028	160,842,790,321
2007	3,604	126,573,847,545	44,353,220,123	170,927,067,668
2008	3,681	134,448,227,416	47,112,511,323	181,560,738,739
2009	3,758	142,750,039,520	50,021,580,667	192,771,620,187
2010	3,835	151,500,879,428	53,087,995,541	204,588,874,969

<표-22> 장의비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75	1,001	1,155,266	1,156,206,508
1976	897	1,204,948	1,080,835,582
1977	1,175	1,327,006	1,559,227,809
1978	1,375	1,505,747	2,070,401,774
1979	1,678	1,779,659	2,986,267,057
1980	1,244	1,773,158	2,205,807,590
1981	1,258	1,824,922	2,295,752,579
1982	1,277	1,972,610	2,519,021,636
1983	1,411	2,073,408	2,925,579,827
1984	1,640	2,115,319	3,469,122,849
1985	1,774	2,176,878	3,861,783,732
1986	1,788	2,115,861	3,783,158,255
1987	1,830	2,172,601	3,975,861,243
1988	2,075	2,283,912	4,739,119,103
1989	1,918	3,013,840	5,780,545,922
1990	2,402	3,906,675	9,383,831,178
1991	2,594	4,540,753	11,778,713,870
1992	2,720	4,975,512	13,533,394,679
1993	2,302	4,981,015	11,466,295,409
1994	2,812	5,071,170	14,260,130,358
1995	2,740	5,102,660	13,981,288,780
1996	2,769	5,769,306	15,975,207,209
1997	2,808	6,103,163	17,137,681,287
1998	2,357	5,798,468	13,666,989,583
1999	2,333	6,004,277	14,009,863,312
2000	2,315	6,244,448	14,453,098,673
2001	2,378	6,494,226	15,442,409,656
2002	2,374	6,753,995	16,033,794,379
2003	2,339	7,024,155	16,428,706,796
2004	2,313	7,305,121	16,896,561,473
2005	2,296	7,597,326	17,439,931,673
2006	2,286	7,901,219	18,063,046,790
2007	2,284	8,217,268	18,770,295,403
2008	2,289	8,545,958	19,562,428,776
2009	2,300	8,887,797	20,439,900,741
2010	2,316	9,243,309	21,404,945,224

<표-23> 상병보상연금 추계

(단위 : 명, 원)

년 도	수급자수	1인당 급여액	총 급여액
1986	503	3,586,357	1,802,496,157
1987	932	3,125,729	2,911,780,519
1988	1,509	3,465,853	5,229,973,948
1989	1,592	5,396,405	8,591,076,803
1990	1,954	5,649,732	11,039,577,968
1991	2,003	6,673,777	13,367,576,676
1992	2,294	7,327,252	16,808,715,259
1993	2,303	8,239,468	18,975,496,886
1994	2,431	9,065,128	22,037,324,877
1995	2,704	9,451,571	25,557,046,740
1996	2,783	11,337,392	31,551,961,126
1997	3,105	12,372,384	38,416,254,310
1998	3,501	13,138,492	45,997,859,503
1999	3,875	14,459,614	56,031,001,597
2000	4,229	15,037,998	63,590,690,167
2001	4,554	15,639,518	71,225,185,470
2002	4,742	16,265,099	77,122,138,938
2003	4,851	16,915,703	82,049,762,739
2004	4,962	17,592,331	87,297,295,261
2005	5,079	18,296,024	92,919,164,905
2006	5,202	19,027,865	98,975,441,202
2007	5,333	19,788,980	105,525,109,537
2008	5,471	20,580,539	112,604,610,503
2009	5,618	21,403,761	120,245,409,324
2010	5,772	22,259,911	128,486,728,777